

부산경제진흥원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연구용역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정책
재조명**

2013. 12. 06.

부산대학교 사회급변현상연구소

제 출 문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정책 재조명」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6일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윤 성 민

- 과제수행기간
2013. 9. 9 ~ 2013. 12. 6
- 과제수행책임자
윤성민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과제수행참여자
강상훈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과제수행보조원
이연정 (부산대학교 사회급변현상연구소 전임연구원)
최기홍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생)

목 차

I. 서론	1
II. 금융환경의 변화	3
1. 국제 금융환경 변화	3
1.1.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정책의 기본 방향	3
1.2. 글로벌 금융규제 변화	6
1.3. 국제금융시장의 질서 변화	13
1.4.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위상 변화	17
2. 국내 금융환경 변화	22
2.1.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부 및 한국은행의 대응	22
2.2. 국내 금융규제의 변화	24
2.3. 국내 금융정책의 변화	30
3. 특화금융 부문의 변화와 향후 방향	37
3.1. 선박금융시장	37
3.2. 파생금융시장	46
III.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정책 재조명	51
1.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정책 내용	51
2.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실적 평가	57
2.1.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의 긍정적 부분	57
2.2.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의 부족한 부분	65
3. 선진 국제금융센터의 성공추진 사례 및 최근 변화	69
3.1. 주요 국제금융센터의 성공추진 사례	69
3.2. 성공추진 사례 벤치마킹	74
4. 부산금융중심지 육성계획 재조명	77
4.1. 부산금융중심지 기존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	77
4.2. 로드맵 수정의 필요성과 강조되어야 할 부분	82
4.3. 새로운 로드맵의 방향과 주요 내용	83
4.4. 새로운 로드맵의 내용 검토	84
4.5. 새롭게 보완된 로드맵 제안	89
IV. 맺음말	92
참고문헌	96

1. 서론

□ 연구 필요성 및 배경

- 세계금융위기는 아직 수습국면에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 이후 세계금융환경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임
- 금융위기 과정에서 리만 브라더스를 포함한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파산하거나 타 금융기관에 흡수되었고, 국제금융도시들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파생상품과 그것의 거래에 대한 문제점들이 인식되었고, 미국의 양적 완화정책 축소가 시작되고 있으며, 보다 강화된 금융규제가 마련되고 있는 등 세계금융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음
- 부산금융중심지의 성공 여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금융환경이 어떻게 자리를 찾아가는가와 무관할 수 없음. 그렇지만 당초 부산금융중심지의 장기비전과 육성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된 것임
- 따라서 ‘동북아 해양·파생금융 허브’ 라는 당초의 목표가 향후 전개될 새로운 세계금융환경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세계금융환경이 변화한다면, 부산금융중심지도 이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그리고 해운물동량의 위축과 조선산업의 침체에 영향을 받아 선박금융 전반이 크게 축소된 부분도 부산금융중심지 육성과 관련하여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 자본시장법 시행과 글로벌 금융시장질서 변화로 인해 금융기관간 이합집산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제2의 거래소가 설립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도 잘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 이후 국내외 금융환경, 금융 규제 및 금융시장질서 등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부산금융중심지 육성계획 및 세부 추진전략의 타당성을 재점검함
- 그리고 국내외 국제금융도시의 위상 변화 및 미래 발전전망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새로운 부산금융중심지 육성계획 및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II. 금융환경의 변화

1. 국제 금융환경 변화

1.1.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정책의 기본 방향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SIFI)’의 안정성 유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하태경, 2013)
 -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부실에서 촉발된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미국의 금융시스템 위기로 연결되고, 전 세계 주요 국가의 금융기관 및 금융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실물경제의 침체로까지 이어져 현재까지 수습 국면에 있음
 - 과거 SIFI에 대한 시스템 지원(systemic support)은 해당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한 국가의 금융기관 부실이 해당 국가 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금융시스템 위기로까지 전이되는 것을 경험한 이후, 글로벌 시스템 리스크(global system risk)를 막기 위한 각종 정책이 마련되고 있음

□ 시스템 리스크의 전이와 글로벌 경기침체

- 시스템 리스크의 정의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았으나, 협의로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시장의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손실 가능성, 광의로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시장의 문제가 금융시스템을 넘어 실물경제 등 경제시스템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의미함
- 지난 금융위기를 통해 리만 브라더스와 같은 대형 투자은행(Investment Bank, IB)의 부실이 순차적으로 다른 국가 금융기관에 시스템 리스크의 전이를 일으키고, 이후 실물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쳐 글로벌 경기침체를 유발하는 것을 경험하였음



자료: (좌) - 하태경(2013), (우) - Gonzo Times(2009)

<그림 II-1> 시스템 리스크의 전이와 경기침체 경로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국의 시스템 지원;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 금융위기 당시 주요국의 정부는 SIFI의 위기가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직·간접적 시스템 지원을 제공하였음

- 부실 금융기관에 정부가 자금을 투입(금융기관 보유 채권 매입, 유상증자 참여, 후순위채 인수 등)하는 직접적 시스템 지원뿐 아니라,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간접적 지원이 모두 제공됨
-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1차적으로 금리인하를 통해 투자수요를 촉진시켜 경기부양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금융위기를 일으킨 주된 요인이 신뢰의 위기(crisis of confidence)였던 만큼, 미국, 일본 등 정책금리 수준이 낮았던 국가들뿐 아니라 영국 및 유로존 국가와 같이 비교적 정책금리 운용의 폭이 컸던 지역의 경우도 금리인하만으로는 시장참여자의 불신을 종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음

<표 II-1> 금융위기 전후의 주요국 정책금리 변화

	2008년 8월 (A)	2010년 3월 (B)	금리 조정폭 (A-B)
미국	2.0%	0.0~0.25%	△1.75~2.00%p
영국	5.0%	0.5%	△4.50%p
유로존	4.25%	1.5%	△2.75%p
일본	0.5%	0.1%	△0.40%p
중국	7.47%	5.31%	△2.16%p
한국	5.25%	2.0%	△3.25%p

자료: 한국은행

-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금리인하 외에도 국채 매입 등과 같은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QE) 정책을 실시하여 유동성 확대를 유도하거나, 주식 및 채권을 인수하는 등 직접적으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하였음

〈표 II -2〉 주요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확대정책

국가	중앙은행	주요 유동성 확대정책 내용
미국	FR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기 직후 6,000억 달러 규모의 주택담보부채권(Mortgage Backed Security, MBS) 매입 발표 - 1차 양적완화: 2009년부터 1조 7,000억 달러 규모 - 2차 양적완화: 2010년 11월 6,000억 달러 규모 - 3차 양적완화: 2012년 9월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MBS 매입
영국	BO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10월까지 1,730억 파운드 규모의 영국 국채(Gilts)를 매입하는 양적완화 실시 - 이후 국채 매입규모를 총 3,240억 파운드로 확대
유로존	EC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대출프로그램(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 LTRO)이라는 유동성 공급정책 시행 후 국채매입전략 시행 - 일종의 국채매입 정책인 SMP(Securities Market Program)를 거쳐 실질적인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인 OMT(Outright Monetary Transaction) 실시
일본	BOJ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대 버블 붕괴로 인해 장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2001년부터 지속적인 양적완화 시행 - 2000년 중반까지 35조엔 규모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 가동 -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누적 기준 56조엔 규모의 국채 매입

자료: 하태경(2013)

- 정부의 개입 방식으로는 신주인수권 행태로 우선주 또는 보통주를 매입하거나 예금을 포함한 은행의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유화를 통한 직접 개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음
- 금융위기를 전후로 주요국 정부가 개별 금융기관에 직접 자금을 지원했던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국 노던록은행(Northern Rock Plc.)과 로이즈뱅크그룹(Loyds Banking Group), 미국 씨티은행을 포함한 씨티그룹(Citigroup), 독일 코메르츠은행(Commerzbank), 네덜란드 ING그룹 등에 대한 지원이 있음

1.2. 글로벌 금융규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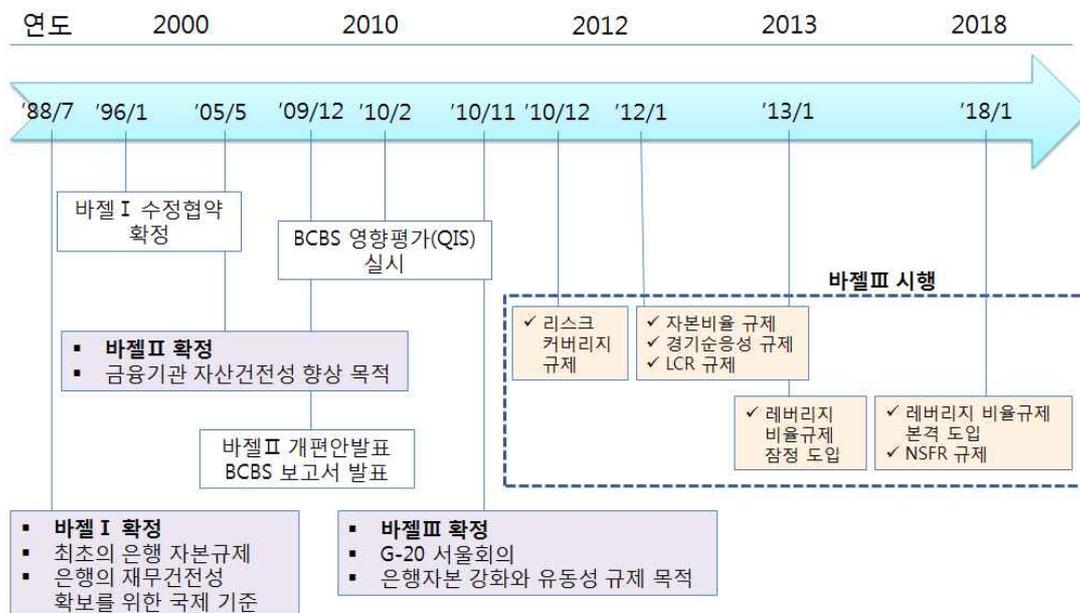
□ 금융규제의 글로벌 공조

-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정책 공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주요국은 G20 회의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음
- 금융규제 정책의 글로벌 공조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자본 완충력과 유동성이 개선되도록 유도하는 예방적 차원의 효과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여 위기사 발생 가능한 손실규모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짐
- 금융규제 강화는 규제 적용으로 인해 은행의 수익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주주의 이익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으나,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는 등 은행의 신용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 전체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음
-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논의된 규제 중 바젤Ⅲ와 G-SIFI(Global-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에 대한 규제는 현재 상당부분 진척이 되었으며, 은행제는 개별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상황임
- 미국의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은 미국 내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지만, 미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각국 은행에도 적용되므로 현재 글로벌화를 추진 중인 국내 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바젤Ⅲ

- 바젤Ⅲ는 2008년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글로벌 정책공조로, 은행자본의 질을 높이고 장단기 유동성 수준을 제고하며, 레버리지 규제를 통해 은행의 무리한 자산확대를 억제함으로써 SIFI와 관련된 규제와 연계하여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음
- 등장배경: 1974년 1차 오일쇼크 당시 독일 헤르슈타트은행(Herstatt Bankhaus)의 파산 사건에 따른 국제 통화·금융시장의 불안정을 경험한 G10 국가의 중앙은행은 은행감독에 관한 국가간 협력 증대를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를 설립하고, 은행감독의 국제적 공조에 합의함

- 1988년 7월 확정된 바젤 I 은 최초의 은행자본에 대한 규제이며,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이후 수정협약을 거쳐 1995년 5월 확정된 바젤 II에서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발생이후 개편안이 발표됨
- 바젤은 BCBS가 마련한 국제기준으로 법률적 강제력은 없으나 회원국의 자발적 이행 약속, BCBS 차원의 이행실태 점검, IMF 등 국제기구를 통한 평가에 반영, 시장의 활용 등을 통해 이행을 유도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9년 3월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이 회원으로 가입하였음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II-2> 바젤 도입 시기별 특징

-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확정된 바젤 III는 위기 확산 과정에서 나타난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기조에 입각하여 보다 포괄적인 규제수단을 도입하고자 시도하였음
- 바젤 III의 규제기조는 ① 스트레스 기간에 개별 은행의 복원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미시건전성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고, ② 은행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와 시스템 리스크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을 도입하는 것임

- 새로운 규제기조에 따라 바젤Ⅲ에 새로이 도입되는 핵심규제는 자본규제 및 유동성비율 규제로 구분됨

〈표 Ⅱ-3〉 바젤Ⅲ의 규제 내용

항목	세부항목	내용
자본 규제	자기자본규제	○ 자기자본 및 기본자본 범위 축소 - 자기자본 범주는 기본자본만 포함하고 보완자본 배제 - 기본자본에서 신종자본증권 등 배제
	레버리지비율규제	○ 레버리지 비율 규제 도입 - 장부 내외의 위험노출(risk exposure)을 모두 고려한 은행의 레버리지 비율 사전 규제
	완충자본규제	○ 완충자본 설정 - 호경기에 완충자본 설정하여 경기순응성 완화
유동성 규제	유동성커버리지 비율규제(LCR)	○ 위기상황 하에서 은행이 30일간 순유출될 현금에 대비해 충분한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측정 $LCR = \frac{\text{고유동성자산(30일 이내)}}{\text{순현금유출(30일 이내)}} > 100\%$
	순안정자금조달 비율규제(NSFR)	○ 일반적 위기상황에서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자산규모를 초과하여 안정적 자금을 유지토록 의무화 $NSFR = \frac{\text{안정자금인정금액(ASF); 부채 및 자본}}{\text{안정자금 필요금액(RSF); 자산}} > 100\%$

자료: 금융감독원

- 바젤Ⅲ에서는 신종자본증권(Hybrid 채권)과 후순위채권이 각각 Tier 1(기본자본) 과 Tier 2(보완자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존불가능 시점(point of non-viability)에서 자본전환 조건이 부여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신종자본증권이 Tier 1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기발생 초기단계(보통주 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는 경우 등)에서 보통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조건이 부가되어야 함
- 이러한 조건의 부과는 금융기관의 자본완충 능력이 제고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채권 투자자의 프리미엄 요구로 인해 조달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져 금융기관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바젤Ⅲ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동성비율 규제로 인해 은행은 회사채 대신 국채 보유에 대한 유인이 커질 수 있음
- LCR 비율의 분모 항목인 순현금유출액 산정시 상대적으로 낮은 이탈율(run off ratio)이 적용되는 소매 및 중소기업 예금 유치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와 같은 현상이 구조화 될 경우, 금융기관의 유동성비율 제고라는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채 보유비중 증가로 자산 운용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며, 예금유치 경쟁으로 조달비용이 상승하면서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G-SIFI(Global-SIFI)와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규제

- SIFI 규제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및 BCBS 등의 국제기구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G-SIFI)’ 을 지정하고, G-SIFI에 대해 특별히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대형금융기관의 부실 가능성을 낮춰 부실의 파급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011년 11월 BCBS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해당 금융기관의 규모(size),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ness), 복잡성(complexity), 대체가능성(substitutes), 국제적 활동성(cross-jurisdictional activity) 등을 기준으로 G-SIFI를 선정하여 건전성 규제를 강화(바젤Ⅲ 기준의 Tier 1 비율보다 1.0~2.5% 높게 부과)하고, 규모 및 업무영역을 제한함으로써 부실발생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억제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표Ⅱ-4> G-SIFI 선정 기준안

기준	비중	내용
규모	20%	특정 은행의 영업활동이 글로벌 영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경우 해당 은행의 부실 또는 도산은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에 보다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상호연계성	20%	은행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여타 은행과 계약상 의무 등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부실의 확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짐
복잡성	20%	개별 은행의 부실 및 도산이 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은 개별 은행의 사업내용과 영업구조, 운영의 복잡성에 비례하여 증가함
대체가능성	20%	개별 은행의 부실 및 도산이 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은 시장참가자 및 고객 서비스 제공자로서 해당 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여타 은행들이 대체하기 어려울 경우 더욱 커질 수 있음
국제적 활동성	20%	개별 은행의 글로벌 영업활동 범위가 넓어질수록 은행 정리절차 관련 협력이 어려워지고 도산에 따른 파급효과도 확대됨

자료: BCBS,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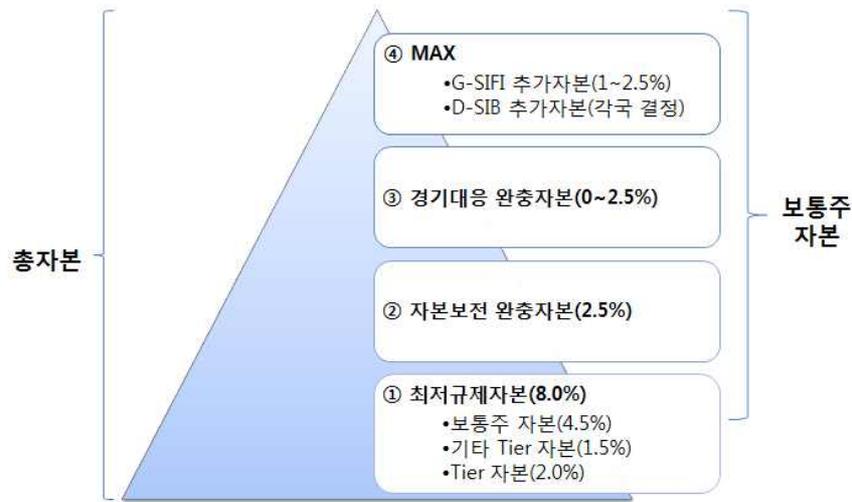
- 한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2011년 11월 발표한 29개 G-SIFI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 8곳, 영국 및 유로존 17곳,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4곳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까지 국내 금융기관 중 G-SIFI에 포함된 기관은 없음

〈표 II-5〉 G-SIFI 29 (2011년 11월 발표)

기관	국가	기관	국가	기관	국가
Bank of America	미국	Barclays	영국	Credit Suisse	스위스
Bank of New York Mellon	미국	HSBC	영국	Deixa	벨기에
Goldman Sachs	미국	Credit Agricole	프랑스	ING	네덜란드
JP Morgan Chase	미국	Societe Generale	프랑스	Banco Santander	스페인
Morgan Stanley	미국	BNP Paribas	프랑스	Nordea	스웨덴
Citigroup	미국	Banque Populaire	프랑스	Mitsubishi UFJ	일본
State Street Bank	미국	Deutsche Bank	독일	Mizuho Financial Group	일본
Wells Fargo	미국	Commerzbank	독일	Sumitomo Mitsui Banking Corp.	일본
Lloyds Banking Group	영국	UniCredit	이탈리아	Bank of China	중국
Royal Bank of Scotland	영국	UBS	스위스	-	-

자료: FSB

- 2012년 11월 BCBS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D-SIB,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규제체계를 확정하여 발표하였음
- D-SIB로 지정되면, 바젤Ⅲ에 의해 보통주 자본은 7%의 비율(경기대응 완충자본 미적용시)을 충족시켜야 함과 동시에 D-SIB 규제에 따라 각국 금융당국이 정하는 비율만큼 보통주 자본비율이 가산되어 적용받게 됨
- 각국의 금융당국은 G-SIFI의 기준안을 기반으로 D-SIB를 선정하여 2016년부터 강화된 자본규제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5년까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관련 법규를 개정해 D-SIB 규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음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II-3> 바젤 III 및 SIFI, SIB 자본규제 구조

- G-SIFI 및 D-SIB의 규제체계가 확정됨으로써, 글로벌 은행과 국내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규제방안이 모두 마련되어 은행부문의 재무안정성과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자본부문의 국제적 논의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임
- G-SIFI와 D-SIB에 대한 규제는 자본완충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은행채권 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됨을 의미함
- G-SIFI 및 D-SIB 적용 이후에도 주주가치 제고, 즉 ROE 개선을 위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아질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자기자본규제로 인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억제될 수밖에 없음

□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과 볼커룰(Volcker Rule)

- 2010년 7월 제정된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은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 미국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총 16장(title)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 방대한 법안임
- 법안의 공식명칭은 ‘도드-프랭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며, 법안 제정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금융규제 체제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금융위기 재발을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금융규제에 대한 반성	규제개혁의 기본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을 감수한 과도한 수익추구 ▪ 대마불사 및 금융기관의 도덕적 헤이 ▪ 금융상품 복잡화로 인한 리스크 파악의 어려움 ▪ 금융시장 국제화 및 상호연계로 인한 위기파급 확대 ▪ 감시·감독기관 체제의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마불사 견제 및 파산절차 구축 ▪ 고리스크 업무 제한 및 금융거래 투명성 확대 ▪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강화 ▪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 체제 구축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II-4> 도드-프랭크법 제정의 기본방향

- 이 중에서 은행규제를 다루고 있는 6장에서는 은행이 자기계정 거래(proprietary trading)를 하거나 헤지펀드 또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련 조항은 일명 ‘볼커룰’로 불리기도 함
- 도드-프랭크법은 2012년 7월 발효되었으나 자기계정 거래금지는 향후 2년간 유예되어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아직 법안의 핵심사항에 대한 상세 규제안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법안의 향방이 주목받고 있음
- 하지만 도드-프랭크법과 볼커룰의 시행은 국제적인 금융제도 개혁의 논의 가운데 가장 먼저 포괄적인 개혁 법안을 제정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타 국가의 금융제도 개혁에 기준을 제공하였음
- 한편, 월가의 금융기관들은 해당 법안의 시행으로 수익이 10% 이상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도드-프랭크법의 적용은 특히 대형 글로벌 IB의 자산운용을 제약하고, 제한된 시장에서 경쟁의 강도를 높여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함

□ 은행세(Bank levy)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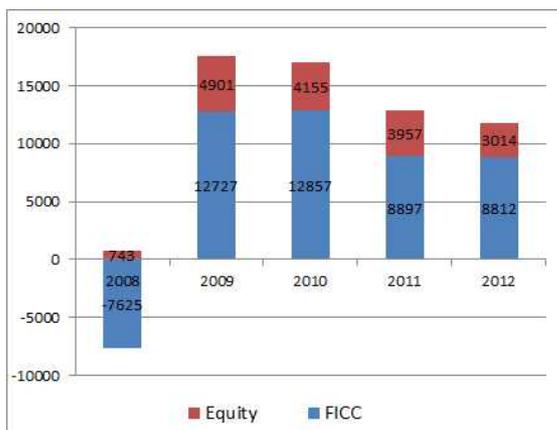
- G20 회의에서 금융위기 처리비용을 금융회사에 부과하기 위한 은행세 도입에 관한 의제가 상정된 바 있으나, 금융위기의 영향이 크지 않았던 캐나다와 호주의 반대로 G20 차원에서 은행세 부과는 어려운 상태임
- 하지만 개별 국가차원에서 공적자금의 회수(미국), 유동성 지원을 위한 금융안정기금 마련(독일) 등의 목적으로 은행세가 도입되기도 하였음

1.3. 국제금융시장의 질서 변화

□ 파생금융거래, FICC(Fixed Income, Currency, Commodity) 등 IB 업무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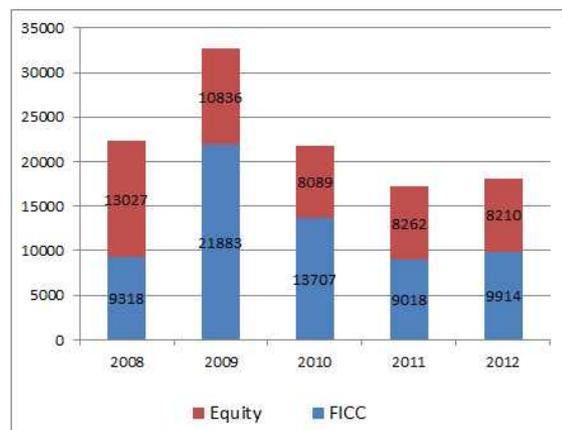
- 과거 글로벌 금융기관의 확실한 수입원으로 여겨졌던 파생금융거래, FICC 사업 부문은 최근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 관련업계의 경쟁 심화 및 금융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차 시장상황이 개선되면서 FICC 부문이 예전 수준을 만회하는 것 같았지만, 이후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대형 투자은행들의 파생금융거래 부문에 대한 수익이 크게 감소하였음
- 대표적인 글로벌 금융기관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BOA)와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GS)의 FICC와 Equity 거래부문의 총순수입(total net revenues)은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각각 176억 2,800만 달러와 327억 1,9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 기준으로는 각각 118억 2,600만 달러(2009년 대비 67.09% 수준)와 181억 2,400달러(2009년 대비 55.39% 수준)로 감소하였음
- FICC와 Equity 거래부문이 총순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BOA의 경우 2009년 14.58%에서 2012년 14.04%로, GS의 경우 2009년 72.43%에서 2012년 53.05%로 감소하였음

(단위:백만달러)



(a) Bank of America

(단위:백만달러)



(b) Goldman Sachs

자료: 각 사의 Annual Report를 이용하여 재정리

<그림 II -5> BOA와 GS 사의 FICC와 Equity 부문 총순수입 변화

□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경영전략 변화

- 금융시장의 규제강화,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전통적인 IB 업무의 수익감소가 지속되자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 특히 수익구조의 다각화를 위해 자산운용업 부문의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음. 대표적인 예로 독일의 도이치은행(Deutsche Bank)은 2010년 유럽계 민간은행인 살 오펜하임(Sal. Oppenheim)을 10억 유로에 인수하여 자산운용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함
 - 스위스 UBS는 2015년까지 10,000명 이상을 감원하고, 채권부문 등 대부분의 IB 업무에서 철수하는 대신 자산운용업, 기업자문 등의 부문에 주력할 예정임
 - 미국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2012년 9월 씨티그룹과 함께 모건스탠리 스미스바니(Morgan Stanley Smith Barney)를 설립하고, 자산관리사업 부문을 강화하였음
- 한편 골드만삭스는 전통적인 은행업무인 PB(Private Banking)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해외 합자회사 설립 등 사업 확대 움직임
 - 자산운용 사업부를 운영했지만 예금이나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던 골드만삭스는 지난 2011년 3월 Dwight Asset Management를 인수하여 자산운용업 부문의 강화를 시사한 바 있음
 - 골드만삭스는 2012년 7월 내부에 PB 사업부를 신설하고 기존 부유층 및 기관고객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PB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음
 - 2011년 인도 자산운용사인 Benchmark Asset Management Co.를 인수하고, 2012년 중국과 합자 자산운용사를 설립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의 사업 확대를 통한 수익 다각화를 추구함
- 상대적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흥국시장 진출을 통해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기관도 다수 존재
 - IB 부문을 비롯한 금융기관 내부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흥국시장으로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음

- 모건스탠리는 2011년 중국건설은행(China Construction Bank)과 함께 합자증권사인 중국국제금융공사(China International Capital Corp., CICC)를 설립하였으며, 2012년에는 인도네시아 증권업 라이선스를 취득하였음
- 프랑스 BNP Paribas와 스위스 Credit Suisse는 아시아 등 신흥국시장에 진출하여 해당 지역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강화하고 있음
- BNP Paribas는 인도, 아프리카, 동유럽 지역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으며, Credit Suisse는 남미, 아시아, 중동 등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중임

〈표 II -6〉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사업개편 및 다각화

기관	주요 내용
Goldman Sach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Dwight Asset Management를 인수하여 자산운용업 부문 강화를 시사 ▷ 2012년 7월 PB 사업부를 신설하여, 기존 부유층 및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PB 사업을 확대하기로 함 ▷ 2011년 인도 자산운용사 인수 및 2012년 중국과 합자 자산운용사를 설립하는 등 해외 시장으로의 사업 확대
Morgan Stanle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씨티그룹과 함께 모건스탠리 스미스바니를 설립하고, 자산관리사업 부문을 강화 ▷ 2011년 중국건설은행과 합자증권사인 CICC를 설립하였으며, 2012년에는 인도네시아의 증권업 라이선스 취득
Deutsche Ba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Sal. Oppenheim을 인수하여 자산운용업 부문 강화
U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IB 업무에서 철수하고 2015년까지 IB 부문 인력 10,000명 이상 감축 예정 ▷ 리스크가 작은 자산운용업, 기업자문 등의 사업 부문 강화 전략 발표
Credit Suis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미, 아시아, 중동 등으로 진출 확대
BNP Parib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아프리카 및 동유럽 지역으로 진출 확대

자료: KDB산업은행, 하나금융경제연구소 재정리

□ 영국, 유로존에 비해 미국지역 글로벌 금융기관의 상황이 양호

-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의 수익성지표인 ROE(Return On Equity)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영국 및 유로존 지역에 비해 미국지역 글로벌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시장의 수익여건 악화로 인하여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을 기준으로 평균 20% 이상을 유지하던 ROE는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하였음

- 금융위기 이후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유로존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2012년 기준으로 주요 금융기관의 ROE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낮게 나타남
- 2012년 기준으로 미국지역 금융기관의 ROE가 유럽지역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수익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보임
- 유럽지역 5개 금융기관의 ROE는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며, 특히 스위스 UBS는 2006년 ROE가 26.2%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2년에는 -5.2%로 크게 하락하였음

〈표 II - 7〉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의 ROE 추이

(단위 :%)

기관	국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Bank of America	미국	17.8	10.6	2.5	3.1	-1.0	0.6	1.8
Goldman Sachs	미국	29.9	29.5	4.3	19.8	11.3	6.0	10.7
JP Morgan Chase	미국	13.0	12.9	3.9	7.1	10.2	10.6	11.0
Morgan Stanley	미국	23.2	9.6	4.2	2.8	9.1	6.9	2.2
Citigroup	미국	18.5	3.1	-21.7	-1.1	6.7	6.5	4.1
Barclays	영국	24.6	20.5	14.6	22.4	7.3	5.6	-1.9
Deutsche Bank	독일	19.4	18.5	-11.3	14.8	5.4	8.1	1.1
UBS	스위스	26.2	-10.5	-58.7	-7.8	18.0	9.1	-5.2
Credit Suisse	스위스	27.5	18.0	-21.1	18.3	14.4	6.0	3.9
BNP Paribas	프랑스	21.2	19.6	6.6	10.8	12.3	8.8	8.9

자료: 각 사의 Annual Report를 이용하여 재정리

□ 금융시스템을 둘러싼 가치의 충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성비율 규제의 강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 경영진 보수체계의 개선 등에 대해 글로벌 차원의 인식 공유가 이루어지면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제방안이 제시되는 등 금융시스템 개혁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도 바람직한 금융시스템의 모습을 둘러싼 가치의 충돌이 나타나고 있음(채희율, 2012)
- 우선 상업은행들의 투자은행화를 금융위기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하면서 상업은행의 업무 및 자산운용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자는 주장과 겸업주의가 금융불안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음

- 미국의 도드-프랭크법은 상업은행의 자산운용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겸업주의에 대한 제한이 공식적인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음
- 또한 금융의 범세계화, 특히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금융위기의 국제적 확산을 용이하게 하므로 자본이동에 대한 제약을 두자는 견해와 자본이동의 긍정적 효과를 간과할 수 없다는 주장도 여전히 대립하고 있음
- 자본이동에 대해서는 최근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더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을 만들 정도로 우세하지 않음
- 그리고 대형 금융회사들이 초래하는 시스템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SIFI에 대한 규제안이 도입되는 등 대형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 금융회사들이 국제경쟁력을 가질만한 최소 규모(critical mass)를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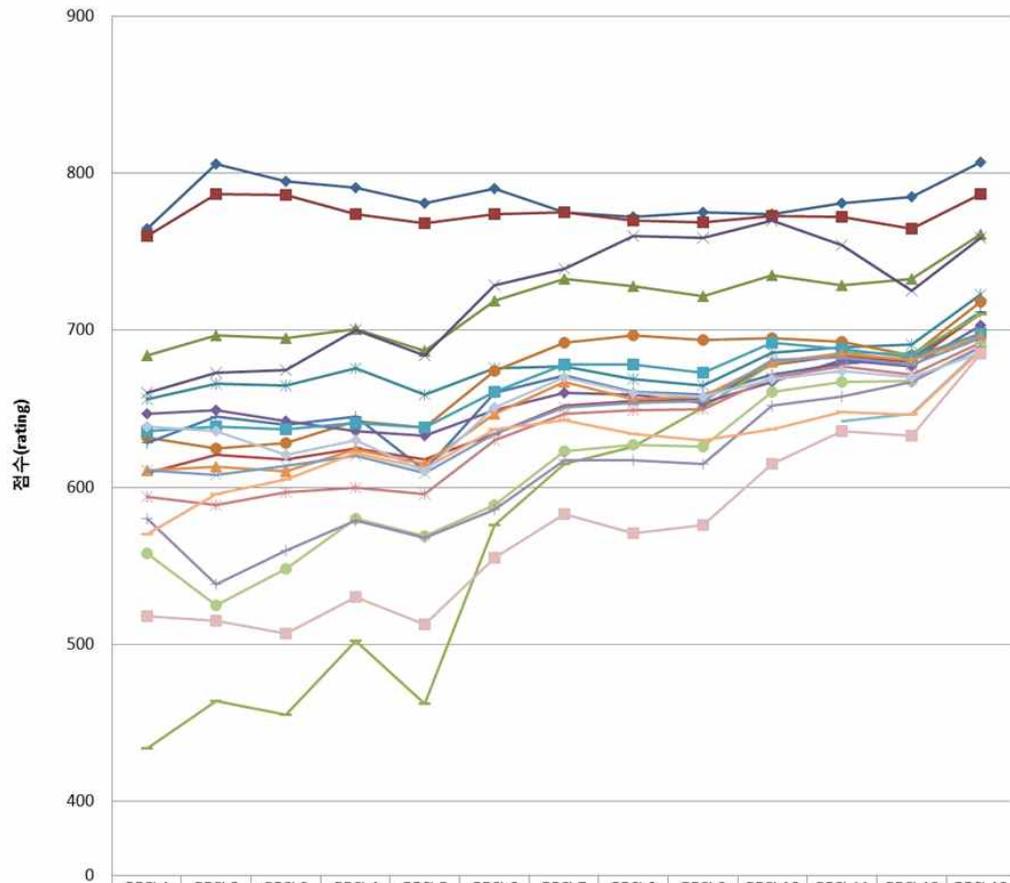
1.4.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위상 변화

-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발표된 국제금융센터지수 GFCI(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위상에 많은 변화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GFCI는 세계 주요 도시들의 국제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수로, 2007년 이후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되고 있음
 - GFCI는 전세계 금융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비롯해,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세계경제포럼(WEF) 등 외부 기관이 평가하는 인적자원(people), 비즈니스 환경(business environment), 시장접근성(market access), 기반시설(infrastructure), 일반경쟁력(general competitiveness) 등 5개 분야의 지수를 종합해 산출됨
 - 2007년 3월에 발표된 GFCI 1은 46개 도시를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새로운 도시들이 평가대상으로 진입함에 따라 2013년 3월에 발표된 GFCI 13은 79개 도시의 국제금융경쟁력을 평가하고 있음
 - 시기별 GFCI의 주요 특징과 2013년 3월에 발표된 GFCI 13을 기준으로 상위 20위에 속한 도시들의 국제금융경쟁력 점수의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음

〈표 II-8〉 시기별 GFCI의 주요 특징

구분	GFCI 1	GFCI 7	GFCI 13
발표 시기	2007년 3월	2010년 3월	2013년 3월
대상 도시	46개	75개	79개
분포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런던을 비롯한 유럽 지역의 비중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국제금융중심지 경쟁력이 높은 도시들이 다수 존재 ▷ 런던이 뉴욕에 비해 인적자원, 비즈니스 환경, 시장접근성, 기반시설, 일반경쟁력 등 5개 부문 모두 우세하여 1위로 선정됨 ▷ 아시아 지역에도 경쟁력을 가진 리더(leader) 금융중심지가 존재함이 확인됨; 홍콩(3위), 싱가포르(4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기 이후 유럽지역 금융중심지의 비중이 상당히 감소하였음 ▷ 주요 금융중심지들은 2009년 금융위기로 떨어졌던 신뢰를 회복해가고 있는 중임 ▷ 런던과 뉴욕이 처음으로 공동 1위를 차지하였음 ▷ 홍콩과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대표 금융중심지임은 확실하지만, 그 다음 아시아 대표 금융중심지를 어디로 볼 것인지는 불확실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위부터 4위에 해당하는 지역의 GFCI 점수차가 상당히 좁혀졌음 ▷ 유럽지역의 금융중심지들은 여전히 유로존 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보스턴이 8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순위 향상을 보임 ▷ 베이징을 제외하고 모든 아시아 지역의 금융중심지의 GFCI 점수가 증가하였음 ▷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금융중심지 비중이 10%를 넘어섬
주요 도시 순위	1위	런던	런던
	2위	뉴욕	뉴욕
	3위	홍콩	홍콩
	4위	싱가포르	싱가포르
	5위	취리히	도쿄
	6위	프랑크푸르트	시카고
	7위	시드니	취리히
	8위	시카고	제네바
	9위	도쿄	시드니
	10위	제네바	심천
우리나라 도시 순위	서울: 43위 부산: 평가 대상 아님	서울: 28위 부산: 평가 대상 아님	서울: 9위 부산: 평가 대상 아님

자료: GFCI 1(2007), GFCI 7(2010), GFCI 13(2013)



	GFCI 1	GFCI 2	GFCI 3	GFCI 4	GFCI 5	GFCI 6	GFCI 7	GFCI 8	GFCI 9	GFCI 10	GFCI 11	GFCI 12	GFCI 13
런던	765	806	795	791	781	790	775	772	775	774	781	785	807
뉴욕	760	787	786	774	768	774	775	770	769	773	772	765	787
홍콩	684	697	695	701	687	719	733	728	722	735	729	733	761
싱가포르	660	673	675	700	684	729	739	760	759	770	754	725	759
취리히	656	666	665	676	659	676	677	669	665	686	689	691	723
도쿄	632	625	628	642	638	674	692	697	694	695	693	684	718
제네바	628	645	640	645	611	660	671	661	659	672	679	682	712
보스턴	609	621	618	625	618	634	652	655	656	678	684	680	711
서울	434	464	455	502	462	576	615	626	651	679	686	685	710
프랑크푸르트	647	649	642	636	633	649	660	659	654	667	681	677	703
시카고	636	639	637	641	638	661	678	678	673	692	688	683	698
토론토	611	613	610	624	615	647	667	656	658	680	685	681	696
샌프란시스코	611	608	614	620	609	634	651	654	655	681	683	678	695
워싱턴 D.C.	594	589	597	600	596	630	647	649	650	670	677	672	692
밴쿠버	558	525	548	580	569	589	623	627	626	661	667	668	690
몬트리올	580	538	560	579	568	586	617	617	615	652	658	667	689
캘거리											642	647	688
룩셈부르크	570	596	605	622	612	637	643	634	630	637	648	646	687
시드니	639	636	621	630	610	651	670	660	658	669	674	670	686
비엔나	518	515	507	530	513	555	583	571	576	615	636	633	685

자료: GFCI 1~13(2007~2013)

<그림 II-6> 주요 금융중심지 점수 변화 추이(GFCI 13기준 20위권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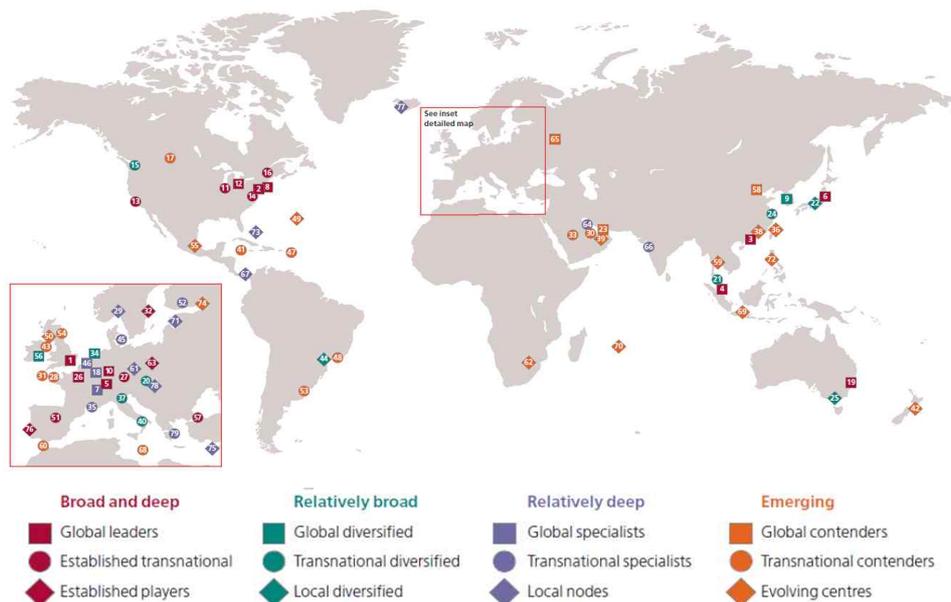
- GFCI에 속하는 금융중심지는 연계성(connectivity), 다양성(diversity)과 전문성(speciality)을 기준으로 금융센터를 12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 최근 2013년도 평가에서 뉴욕, 런던, 홍콩, 싱가포르 등은 국제금융센터의 리더로, 그리고 더블린, 서울 등은 비교적 광범위한 국제금융센터로 평가받음

〈표 II-9〉 국제금융센터 유형별 구분

	Broad & Deep	Relatively Broad	Relatively Deep	Emerging
Global (“G”)	G Leader (뉴욕, 런던, 홍콩, 싱가포르 등)	G Diversified (더블린, 서울 등)	G Specialist (룩셈부르크 등)	G Contender (베이징, 두바이, 모스크바 등)
Transnational (“T”)	Established T (시카고 등)	T Diversified (상하이 등)	T Specialist (아테네 등)	T Contender (버진아일랜드 등)
Local (“L”)	Established Player (리스본 등)	L Diversified (멜버른 등)	L Node (바하마 등)	Evolving Center (아부다비 등)

자료: GFCI 13(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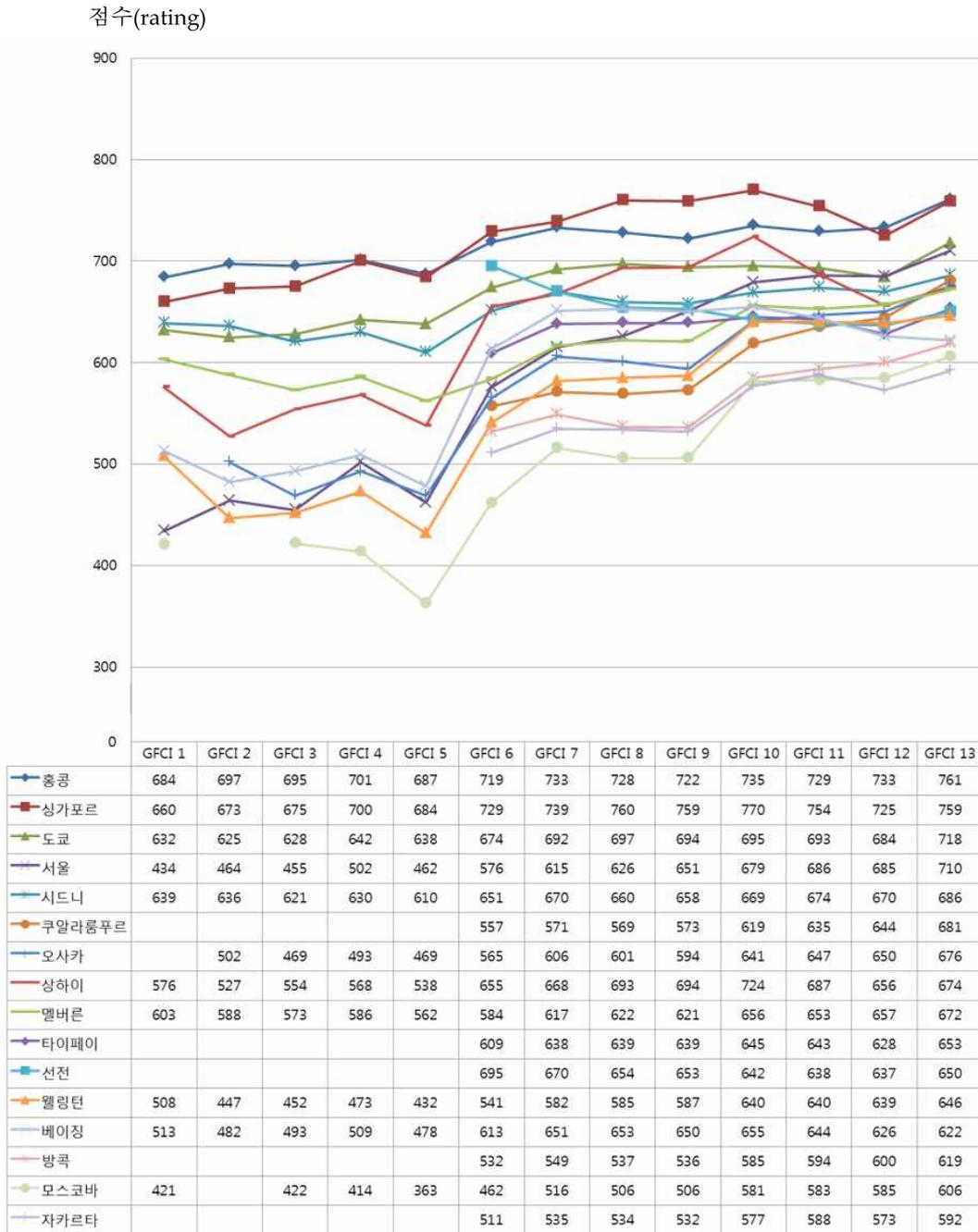
- 금융중심지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유럽, 북미, 중·동북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음



자료: GFCI 13(2013)

〈그림 II-7〉 국제금융중심지의 지역별 분포

- 금융중심지 관련 추세의 최근 특징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금융중심지인 유럽지역은 위축되고 아시아/태평양, 아메리카 지역의 신흥 금융중심지 순위가 상승하고 있으며, 금융중심지 간의 연계성 및 협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자료: GFCI 13(2013)

<그림 II -8> 아시아/태평양 지역 금융중심지의 점수 변화 추이

- 특히 아시아 지역의 금융중심지 순위가 상승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아시아 지역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고, 아시아 지역의 실물경제가 타 지역에 비해 건전한 상태인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반면 북미 및 유럽 지역의 금융중심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순위가 하락하였다가 최근에는 다시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GFCI 14에 따르면, 앞으로 중요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중심지는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특히 부산은 싱가포르(1위), 상하이(2위)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음

〈표 II-10〉 앞으로 중요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중심지

금융중심지	응답수
싱가포르	62
상하이	60
부산	57
홍콩	36
서울	35
지브랄타	27
룩셈부르크	26
베이징	17
두바이	15
선전	15
이스탄불	11

자료: GFCI 14(2013)

2. 국내 금융환경 변화

2.1.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부 및 한국은행의 대응

- 리만 브라더스 파산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급속한 자금경색 현상이 나타나면서 유동성 위협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리인하와 함께 다양한 정책으로 대처하였음
-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3.25%p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여 5.25%였던 기준금리가 2%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기준금리 인하 외에도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였음

- 원래 공개시장조작 대상 채권은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에 국한되었으나 리만 브라더스 파산이후 일부 신용위험채권(은행채, 토지개발채권, 대한주택공사채, 중소기업진흥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사채 및 주택저당증권)을 공개시장조작 대상 채권에 포함시킴으로써 자금순환이 더욱 용이하도록 하였음

〈표 II-11〉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정책

원화유동성		외화유동성	
항목	규모	항목	규모
총액한도대출증액	3조 5,000억원 (기존 6조 5,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증액)	외환스왑 거래	102조 7,000억원 (미국, 중국, 일본)
은행자본확충펀드 지원	3조 3,000억원	외화대출	163조 5,000억원
채권시장안정펀드 지원	2조 1,000억원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1조 5,000억원
비정례 RP매입	16조 8,000억원	-	-
국고채 직매입	1조원	-	-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	7,000억원	-	-
지급준비예금 이자지급	5,000억원	-	-
신용보증기금 출연	1,000억원	-	-
합계	28조원	합계	267조 7,000억원

자료: 한국은행

- 또한 중소기업대출 지원을 통해 은행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총액한도 대출규모를 기존 6조 5,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3조 5,000억원 증액하였으며,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과 관련하여 3조 3,000억원을 지원, 펀드(2009년 3월 기준 펀드 총 실지원금은 3조 9,600억원)가 은행의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을 인수함으로써 은행의 유동성과 재무건전성 개선을 도모하였음
- 한편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미국 연방준비은행(FRB)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거래를 체결하였고, 중국인민은행(1,800억 위안) 및 일본중앙은행(200억 달러)과도 통화스왑거래를 체결함으로써 외화유동성 확보에 주력하였음

- 정부는 2008년 9월 이후 국내 은행이 외화차입에 어려움을 겪자 은행 대외채무에 대해 1,000억 달러 규모의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으며,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대외채무 지급보증은 은행의 지급보증 수수료 발생(100bp로 시작, 이후 70bp로 인하)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외화유동성 확보에 기여하였음

2.2. 국내 금융규제의 변화

□ 글로벌 금융규제 적용과 그 영향

○ 바젤Ⅲ의 자기자본 규제

- 바젤Ⅲ의 자기자본 규제는 바젤Ⅱ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4가지 차이가 존재함: 자본비율 규제 상향, 자본인정기준 강화에 따른 자기자본 감소, 리스크 포괄범위 확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 명목금액기준 레버리지비율 도입으로 과도한 레버리지 방지
- 자본비율 규제 상향의 핵심은 보통주자본과 Tier 1 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2013년부터 규제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2019년에 전면 적용될 예정임

〈표 II-12〉 바젤Ⅲ의 자기자본비율 기준

		보통주자본 최저비율	Tier 1 비율	BIS 자기자본비율 (A)	손실보전 완충자본(B)	요구되는 총자본비율 (A+B)
바젤Ⅱ		2.0%	4.0%	8.0%	-	8.0%
바젤Ⅲ	2013년	3.5%	4.5%	8.0%	-	8.0%
	2015년	4.5%	6.0%	8.0%	-	8.0%
	2019년	4.5%	6.0%	8.0%	2.50%	10.5%

자료: 금융감독원

- 국내 은행 중 Tier 1 비율이 바젤Ⅲ의 2019년 기준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비율을 낮추고 자기자본을 축적하라는 감독당국의 압력이 발생할 수 있음

- 한편, 2012년 10월 발표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바젤Ⅲ에서 요구하는 자본 인정기준 강화 요건에 따라 국내 은행이 적격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2013년~2022년 중 적격후순위채권 규모를 2011년말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50bp, 100bp, 150bp 금리상승시 조건부 후순위채권 발행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같은 기간중 약 1,282억원, 2,565억원, 3,847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표Ⅱ-13〉 국내 은행의 조건부 후순위채권 발행에 따른 부담

필요 발행규모	은행 추가 부담		
	50bp 상승시	100bp 상승시	150bp 상승시
25조 6,499억원	1,282억원	2,565억원	3,847억원

주: 1) 필요발행규모는 2011년말 적격후순위채권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발행해야 하는 후순위채권 예상 발행물량을 의미

2) 은행추가부담은 후순위채권 필요발행규모에 금리상승폭을 곱하여 계산

자료: 한국은행

- 바젤Ⅲ에 따른 자기자본 인정기준 강화, 리스크 포괄범위 확대, 레버리지 비율 도입 등은 IB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규제이므로, 이러한 IB 부문에 대한 규제 강화는 국내 은행의 IB 업무 확대 움직임을 위축시킬 가능성 있음
- 또한 국내 대형은행 등은 단계적인 자본요건 강화를 감안하여 보유자산이나 사업구조 조정(비핵심 자산의 매각 등) 등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은행의 수익 다변화, 포트폴리오 확대 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바젤Ⅲ의 유동성 규제

- 바젤Ⅲ의 주요 유동성 규제 지표로는 LCR(Liquidity Coverage Ratio)과 NSFR(Net Stable Funding Ratio)이 있음
- LCR(2015년부터 적용)은 단기 유동성비율 지표로 30일간 발생할 수 있는 순현금 유출보다 고유동성자산(현금, 국공채 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NSFR(2018년부터 적용)은 조달의 안정성비율 지표로 장기자산(대출 등)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조달(자본, 소매예금의 일정비율 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

- 국내 은행의 경우 2010년말 BCBS의 평가결과 LCR은 83%, NSFR은 93% 수준에 불과하여 바젤Ⅲ의 규제수준인 100%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장기조달 확대 및 안전자산 확대 등이 필요한 상황임
-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순현금유출액 산정시 상대적으로 낮은 이탈율(run off ratio)이 적용되는 안정적인 소매예금 유치를 위한 은행간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은행채 만기의 장기화(1년물 감소 및 2~3년물 증가 등) 등으로 조달금리 상승압력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운용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은 높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대출 등의 비중이 축소되고, 국공채, 우량 회사채 등 고유동성자산 보유에 대한 유인이 커져 운용수익 하락압력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NSFR 규제 충족을 위해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경우 추가적인 자본 확보 등 상당한 규모의 안정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은행들의 경우에도 자기 자본비율과는 별개로 조달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자본 확대가 요구됨

〈표Ⅱ-14〉 바젤Ⅲ 적용에 따른 국내 은행의 유동성 자산 구성

구분	LCR 산정시 유동성 자산 인정비율	글로벌 은행 비중 (23개국)	국내 은행 비중 (8개)
현금	100%	5%	10%
중앙은행 예치금	100%	19%	24%
국채	100%	45%	21%
중앙은행 채권	100%	6%	7%
정부유관기관 채권	100%	12%	10%
자국정부 발행 외화채권	100%	3%	0%
AA- 이상 회사채	85%	2%	10%
AA- 이상 커버드본드	85%	2%	0%
타국가 정부 채권	85%	1%	0%
공공기관 채권	85%	6%	18%
-	-	100%	100%

주: 글로벌 은행 비중은 2010년 12월 BCBS가 실시한 영향평가(QIS)에 참가한 23개국, 263개 은행의 평가결과를 의미하며, 국내 은행 비중은 QIS에 참가한 한국의 8개 은행(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의 평가결과를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 실제로 국내 은행(바젤Ⅲ 규제영향평가에 참여한 8개 은행 기준)은 글로벌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채 보유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바젤Ⅲ의 유동성비율 규제 적용시 글로벌 은행에 비해 유동성비율이 낮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LCR 비율 개선을 위해 향후 국채 보유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표Ⅱ-15〉 바젤Ⅲ 적용에 따른 유동성비율 산출 결과

구분	글로벌 은행 (23개국)		국내 은행 (8개)	
	Group 1 (대형, 94개)	Group 2 (중소형, 169개)	Group 1 (대형, 5개)	Group 2 (중소형, 3개)
LCR 비율	83%	98%	76%	75%

주: 1) 글로벌 은행 비중은 2010년 12월 BCBS가 실시한 영향평가(QIS)에 참가한 23개국, 263개 은행의 평가결과를 의미하며, 국내 은행 비중은 QIS에 참가한 한국의 8개 은행(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의 평가결과를 의미함
 2) 국내 은행의 경우 Group 1에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중소기업은행이, Group 2에는 농협, 대구, 부산은행이 참여하였음

자료: 금융감독원

- 한편, 이러한 규제의 적용은 금융기관의 순이익 고배당 자제와 내부유보의 확대에 이어질 수 있으며, 유동성비율 제고라는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공채 및 우량 회사채 등의 보유 비중이 증가해 운용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며, 안정적인 소매예금 유치 경쟁으로 조달비용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국내은행의 유동성리스크를 낮춤으로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음
- 도드-프랭크법과 불커률은 미국 내에서 적용되는 법안이지만 규제 대상에 미국 내에 현지법인 및 지점이 있는 외국은행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거래를 하는 은행도 적용이 될 예정이어서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금융소비자보호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최근 복합금융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이를 판매하기 위한 채널도 다원화됨에 따라 금융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일반금융소비자’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금융분쟁 접수건수는 펀드 열풍이 일었던 2007년 이후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식시장이 침체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

〈표 II-16〉 금융분쟁 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은행·중소서민	2,154	2,020	5,200	5,574	4,351	10,036	9,179	△8.5
금융투자	470	561	1,163	1,872	788	763	532	△30.3
보험	15,765	14,498	14,662	21,542	20,749	22,654	26,531	17.1
합계	18,389	17,079	21,025	28,988	25,888	33,453	36,242	8.3

자료: 금융감독원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통상적으로 금융거래를 위한 정보가 부족하고 금융지식이 낮아 협상력이 떨어지는 일반금융소비자를 주된 보호대상으로 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제정은 종전의 권역별로 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항목들을 하나의 법률체계로 통합하여 기능별로 규제함으로써, 동일한 기능에 대해 일률적인 규제 적용을 목적으로 함
 - 현재 시안단계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통합 법안은 금융소비자보호의 일반원칙에서부터 분쟁조정 및 감독·검사·제재에 이르기까지 금융소비자보호 규정 전반에 걸쳐 포괄하고 있으며, 법안의 주요 쟁점은 금융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사항,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영업행위 규제와 관련된 사항, 금융분쟁 발생시 책임소재 관련 사항 등으로 압축됨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제정되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표 II -17〉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기본 체계

구성	주요내용
제1장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목적 ▷ 금융소비자의 개념 ▷ 금융상품 및 금융상품 판매업무 재분류, 용어 정의
제2장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반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의성실의무 ▷ 판매업자의 임·직원 관리의무 ▷ 일반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계약 해지권 ▷ 판매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입증 책임 전환 등
제3장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영업행위 규칙: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구속성 계약체결 금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부당광고 금지 등 ▷ 판매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직접판매, 대리, 중개, 자문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규율
제4장 판매업자의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인가·등록 규제체계 ▷ 미인가·미등록 판매업자의 영업행위 금지
제5장 분쟁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적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분쟁조정제도 등
제6장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방안 ▷ 금융소비자 교육·홍보 등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지원근거 등
제7장 감독·검사·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업자에 대한 일반적 검사·감독·제재권

자료: 금융감독원

- 반면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금융회사에 주어지므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 한편, 글로벌 금융규제환경이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됨에 따라, 2012년 5월 금융감독원 산하에 준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립해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기능과 소비자보호기능을 분리하였음

〈표 II -18〉 금융기관 건전성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한 국가 예시

국가	분리시기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미국	2010년	연방준비은행(FRB)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영국	2012년	영란은행 산하 건전성 감독원(PRA)	영업행위감독원(FCA)
네덜란드	2004년	중앙은행(DNB)	금융시장청(AFM)
오스트레일리아	1998년	건전성규제청(APRA)	증권투자위원회(ASIC)

자료: 금융감독원

□ 외환건전성부담금을 통한 은행세 부과

- 우리나라는 2011년 8월 1일부터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부채 증가 억제를 통한 외환 수급 변동성 축소 방안으로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 즉, 금융위기 이후 투기성 자금의 유출입 등으로 외환수급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자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 만기에 따라 0.02~0.20%의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전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외화부채 중 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일종의 은행세 부과 효과를 가짐
 - 과거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나라로서는 외환관리가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므로, 은행의 외화유동성 위험관리를 위한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궁극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되고 있음
 - 하지만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로 인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의 수익성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2.3. 국내 금융정책의 변화

□ 자본시장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영향

- 2013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2007년에 제정되고 2009년 2월부터 시행된 종전의 자본시장법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초기에 기대했던 변화를 이루기에는 미흡했고,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및 국제공조 논의 진행에 따라 기존 법률의 개정 필요성 대두된 바 있음
 - 종전의 자본시장법은 금융상품 개념의 포괄주의와 기능별 규제원칙에 따라 자본시장 관련법을 통합재편하면서 초대형 투자은행(IB)의 설립을 통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추구하였음. 그러나 자본시장법 시행 후 다수의 증권회사가 난립하여 과도한 비효율적 경쟁이 가열되어 왔고, 선진형 자본시장 체제에 비하여 자본시장 인프라, 자산운용산업의 규제체계, 자금조달체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있어 여러 문제점들이 대두됨

- 이번 개정법은 통합 자본시장법의 시행과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 전반을 개혁하기 위한 시도로 파악됨
- 자본시장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크게 6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선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하여 3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지정하여, 투자은행이 종합적인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여신, 내부주문집행, 프라임 브로커(prime broker) 업무 등을 허용하고 있음
 - 이를 통해 금융투자회사는 과거 위탁매매, 단순중개 위주에서 신성장 분야 기업 발굴, M&A 자문 등 기업금융의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 투자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자본력, 평판을 갖춘 글로벌 수준의 플레이어(player) 출현이 기대됨
 - 이와 더불어 금융전문인력 양성, 백오피스(back office) 업무 등 관련 금융산업 분야의 동반성장 기대됨
 - 그리고 유통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한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 법정주의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다자간 매매체결회사(ATS)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CCP) 제도를 도입함
 - 거래소 허가제 하에서는 복수 거래소의 출현이 가능해져 거래소간의 경쟁을 통한 매매체결시스템의 효율화로 투자자 거래비용의 감소, 거래체결 속도의 증가, 기타 서비스 향상 효과 등이 예상됨
 - 중앙청산소 도입으로 장외파생상품의 결제불이행 위험이 축소되고, 향후 기관간 RP, 증권대차 등 장외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발적인 청산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음
 - 자본시장법 개정은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가간 금융시장 연계성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공정거래에 대해 해외 수준의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국가간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제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표 II-19〉 자본시장법 개정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은행의 개념 및 지정기준 명확화: 투자은행을 자본시장법상 일반 증권회사와 차별화되는 법적 개념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정의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다양화 유도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별도의 자기자본규제 적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절차 마련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운용산업간 경계 명확화 ▷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기타 펀드 운용의 자율성·창의성 제고 등 ▷ 신탁업 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 ▷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도입
자본시장 인프라의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ATS·거래소 허가제 도입에 따른 시장개념 재정의 ▷ 금융투자업자에 최선집행의무(Best Execution) 부과 ▷ 장외거래소 중앙청산소(CCP) 도입 ▷ 신용평가업 규제 정비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및 주주총회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 조건부자본증권, 신주인수선택권증권 발행 허용 ▷ 현행 주주배정 방식의 문제점 보완 ▷ 상장기업의 주주총회 내실화를 제도적으로 지원 ▷ 최근 개정상법 반영 등 제도적 미비점 보완
인수·공시·불공정거래 규제의 실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 및 공시 제도의 합리적 개선 ▷ 불공정거래 규제체계의 정비
그 밖의 제도적 미비점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의 미비점 보완 ▷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자격요건 관련 내용 정비 ▷ 은행권의 수시입출금식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정비 ▷ 단기매매차익반환 대상자에서 상장기업의 직원을 제외

자료: 금융감독원

-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KRX)에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 party, CCP)가 설치된다면 부산금융중심지에서 장내·외 파생상품시장의 매매, 청산, 결제를 모두 아우르게 되므로, 부산이 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거래소 허가제에 따른 복수 거래소 출현의 가능성은 KRX의 독점적 지위를 잃게 만듦으로써 부산금융중심지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내용은 아님

- 자본시장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해외 글로벌 자산운용사 및 금융기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착공 지연 등으로 부산금융중심지의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입주시키기 빠른 서울국제금융중심지(SIFC)로의 관심이 증가하여 관련 기관 유치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부의 정책금융 체계 개편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정책금융의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산업은행 민영화 중단, 기업은행 지분매각 보류를 결정하였음
 - 정부는 시장과의 마찰에 따른 산업은행의 역할 재정립과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IB의 육성을 위해 2008년 6월 산업은행 민영화를 발표하였음. 그러나 예상치 못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중소기업 지원, 기업구조조정, 신성장산업의 육성, 중견기업의 지원, 수출금융 및 해외금융의 지원 등 산업정책적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커져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책은행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의 체계 개편을 마련중임
- 정책금융의 기능별 현황
 - 대내 산업정책적 금융지원 :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 대외 산업정책적 금융지원 :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 중소기업 금융지원 : 기업은행,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금융공사
- 정책금융시장의 특징 및 문제점
 - 대외 산업정책금융시장 : 최근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사이의 업무 경쟁 심화와 녹색산업지원, 문화컨텐츠 분야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 해외투자 지원 등의 부문에서 두 기관의 중복적 지원으로 비효율성이 우려되고 있음. 또한 해외 중장기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기관간의 경쟁 심화로 심사부실, 중복지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무역보험공사는 2008년부터 2011년간 누적 순손실액이 약 1조 7,000억원으로 신용위험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음

- 대내 산업정책금융시장: 대내 산업정책금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금융공사의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임. 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 민영화에 따른 산업정책금융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사실상 산업은행 민영화가 백지화됨에 따라 그 정체성이 부족하여 최근 다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어 정책금융 개편과 관련한 논란의 중심에 놓여있음

〈표 II-20〉 주요 정책금융기관 현황 및 기능(2011년 기준)

(단위: 조원)

구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보증기관	무역보험공사
설립일자	1979년	2009년	1954년	1976년	1961년	신보: 1976 기보: 1998 지역신보: 1996	1992년
총자산	16.4	70.1	132.8	55.1	187.3	신보: 38.4 기보: 17.3 지역신보: 14.5	보험잔액: 99.9
자본금 (납입 자본금)	1.3 (-)	22.0 (15.0)	17.7 (9.3)	7.5 (6.3)	13.1 (3.2)	신보: 5.4 기보: 2.8 지역신보: 2.5	1.0 (-)
주요 업무	중소기업 지원 창업 및 진흥기금 관리·운영	중소기업 지원, 녹색신성장 산업 육성 지역개발 및 SOC 확충, 금융시장 안정	국민경제발 전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공급, 기업투자, 국제금융, 소매금융	수출입, 해외투자 업무, 해외자원개 발 금융지원	중소기업 지원	신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및 보험 기보: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평가 및 보증 지역신보: 지역소기업·소 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위한 보험

자료: 산업연구원

- 또한 대내 산업정책금융은 보증과 대출간의 중복지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되고 있으며, 보증의 경우 이미 성숙단계에 이른 기업들에게까지 지원되는 등 정책금융의 설립취지에 위배, 시장과의 마찰의 문제가 존재함
- 최근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공사를 흡수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무역보험을 수출입은행으로 일원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편안 찬반에 대한 논란이 커 논의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역외금융 관련 정책의 내용과 영향

- 역외금융(offshore finance)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상대로 대출 또는 투자하는 금융활동을 말함. 이러한 역외금융 활동이 집중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을 역외금융시장 또는 역외금융중심지(Offshore Financial Center, OFC)라고 부름(Inside 부산금융, 2013)
- 역외금융시장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내외일체형, 내외분리형, 조세회피형 역외금융시장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표에서 런던, 뉴욕, 홍콩,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글로벌 금융중심지이기도 함

〈표 II -21〉 역외금융시장의 유형

구분	내용	주요 지역
내외일체형	국내시장과 역외시장을 분리하지 않고 두 시장 간에 자금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시장	런던, 홍콩
내외분리형	국내시장과 역외시장을 분리하여 특별계정 설치를 통해 역외거래를 구분하는 시장	뉴욕, 싱가포르
조세회피형	기업 등이 세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융거래 기장만 해두고 금융거래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	바하마, 버뮤다

자료: Inside 부산금융(2013), 재정리

- 우리나라의 경우 1968년 1월에 역외금융거래 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외국환은행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였으나,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실시된 외환자유화 조치과정에서 대부분의 역외계정 우대조치가 폐지되어 현재는 역외계정 거래에 대한 실익이 거의 없는 상황임

- 현재 남아있는 역외금융 관련 제도 및 정책은 다음과 같음

〈표 II-22〉 역외금융 관련 제도 및 정책

구분	내용
기획재정부 외국환 거래규정	▷ 제2-10조(역외계정의 설치·운영) 중 -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상대로 운용하는 역외계정을 설치한 경우, 일반계정과 구분 계리하여야 함 - 역외계정과 일반계정 간의 자금이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직전 회계연도 중 역외외화자산평잔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의 자금이체의 경우는 제외)
조세특례 제한법	▷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 제21조2(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외)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정기외화예금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예금에서 발행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자료: Inside 부산금융(2013)에서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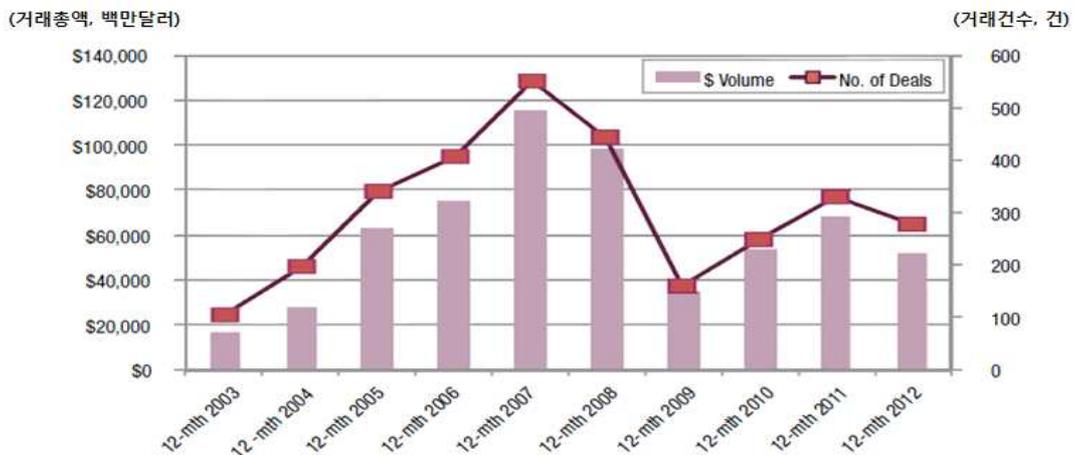
- 현재 역외금융시장 또는 역외금융중심지를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미흡한 수준임
 - 제주의 경우 금융중심지 선정 여부와는 별개로 제주역외금융센터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
 - 부산금융중심지를 역외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 논의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이와 관련한 세제 및 각종 인센티브 제도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전무한 상황임
 - 대표적인 글로벌 금융중심지들이 역외금융중심지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산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역외금융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3. 특화금융 부문의 변화와 향후 방향

3.1. 선박금융시장

□ 세계 선박금융시장의 현황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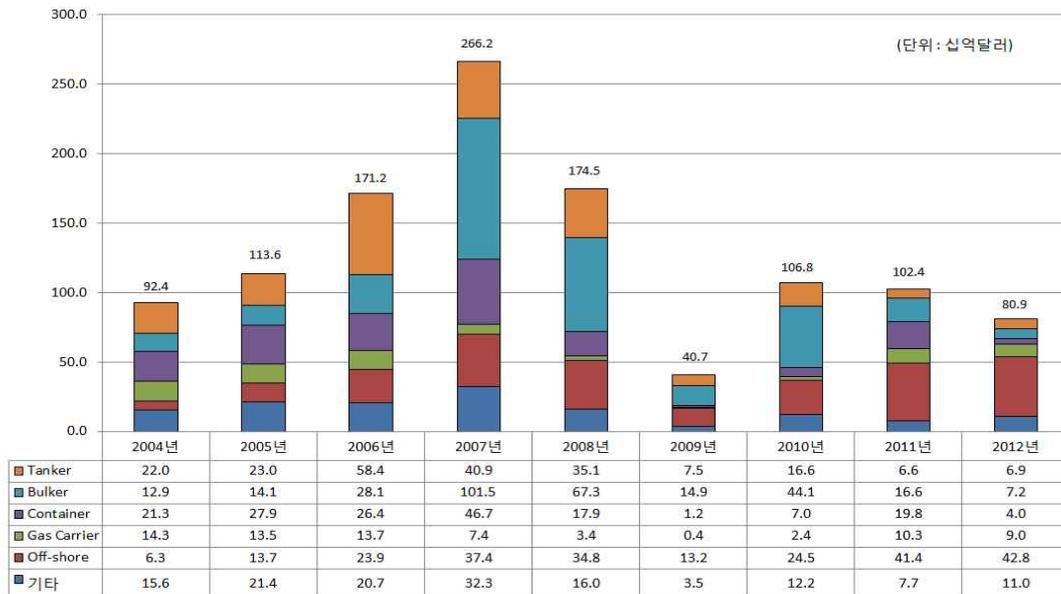
- 세계 선박금융시장 대출 규모는 2007년에 약 1,150억 달러로 최대치에 이른 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위축되어 2012에는 약 520억 달러로 축소
 - 2008년 금융위기, 최근의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와 BRICs 국가의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인하여 해상물동량의 감소, 해상운임의 하락으로 해운선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음. 이 때문에 기존 발주한 선박의 취소, 인도 연기, 중도금 연기, 계약조건 변경, 계약선가 조정 등이 나타남



자료: Dealogic, Marine Money International에서 재인용

<그림 II-9> 세계 선박금융 대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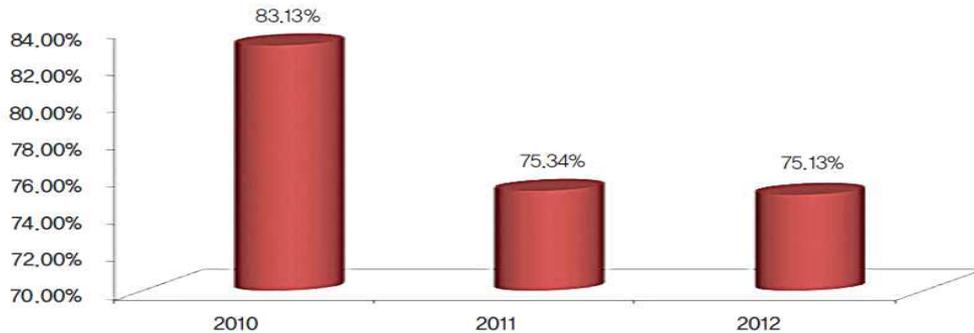
- 세계 선박금융 신조투자규모는 2012년 809억 달러로, 이는 최고치인 2007년의 2,662억 달러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자료: Clarkson Research Services

<그림 II-10> 선형별 신조선박투자 규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일본, 미국계 은행의 선박금융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유럽계 은행의 비중은 축소되었음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계 은행들의 선박금융 대출여력 감소에 따라 선박금융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비유럽계 은행 비중이 증가하였음
 - 2010년 기준 선박금융 대출취급 상위 40개 은행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유럽(83%), 미국(15%), 아시아(2%)를 차지했지만, 2011년부터 유럽계 은행들의 비중이 감소하고 아시아권의 은행들의 선박금융 비중이 증가함



자료: Petrofin Research, 2012년 경우는 11월말까지 누적액 기준(여대웅, 2013, 재인용)

〈그림 II -11〉 세계 선박금융에서 차지하는 유럽계 은행의 비중 추이

- 전통적으로 선박금융이 활성화되어 있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계 은행들이 선박금융을 대폭 축소하였으며, 특히 선박금융 세계 3위 독일 코메르츠뱅크(Commerzbank)가 은행의 유동성 악화와 바젤Ⅲ 규제가 강해지면서 2012년 선박금융 사업을 포기하였음
- 세계 선박금융 거래에서 아시아계 은행의 비중은 증가하였음
 - 2012년 들어 Bank of China(중국) 3위, 미즈비시도쿄UFJ은행(일본) 10위, CEXIM(중국) 12위, KEXIM(한국) 14위에 오르는 등 최근 아시아계 은행 비중의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Inside 부산금융, 2013)
 - 선박금융을 취급하는 아시아계 은행 내의 비중을 보면 중국이 46%, 일본이 41% 그리고 한국이 1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선박금융 실적은 미미한 수준임
 - 특히 중국은 해운 및 조선사업 보호와 육성을 명분으로 중국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 등을 통해 자국선사에 대한 선박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선박금융 자금조달 방식에도 유럽계 은행의 위축으로 신디케이트론이 감소하고 채권발행 및 사모펀드 방식이 확대되는 추세임
 - 2011년말 현재 선박금융 내 신디케이트론의 국가별 비율은 유럽계 은행이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독일계 35%, 북유럽계 17%, 네덜란드계 11% 순임(장경석, 2013)

- 주로 유럽계 금융기관을 통해 주선되었던 신디케이트론은 감소하고 최근 미국계 은행의 주선에 의한 채권발행 및 사모펀드를 활용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조성제, 2013)
- HSBC(2012)에 따르면 향후 선박금융 조달원은 조선소 보증의 메자닌 금융¹⁾과 공모 회사채 및 선박펀드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홍성인, 2012, 재인용)

〈표 II -23〉 선박금융 자금조달원의 변화

기존 주요 금융조달원	신규 주요 금융조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nk Loan(주로 유럽계 은행) ▷ 채권발행(미국,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nk Loan(중국 등 신규진입) ▷ 채권발행(High yield 채권, 전환사채 등 다양화) ▷ 이슬람 펀드, 개발은행 금융, ECA 금융 등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국내 선박금융시장의 현황

- 국내 선박금융시장 규모는 세계 선박금융시장에서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대부분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12년말 신디케이트론 취급잔액 기준으로 국내 선박금융시장 규모는 154억 달러로서 세계 선박금융시장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음. 하나경영연구소 발표(2013.5.13)에 따르면 국내 선박금융시장 위축으로 2012년 기준 한국의 신조 선박금융 점유율은 1.6%에 불과함
 - 국내 선박금융은 대부분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시중은행은 선박금융을 기피하는 상황임
- 2002년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펀드 도입 이후, 최근 확대되는 추세임
 - 2012.6월까지 10년간 131개의 선박펀드를 통해 총 8.6조원을 조성하여 18.5척의 선박 건조 또는 매입에 참여함

1) 메자닌 금융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금융으로서 은행 및 대출기관이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이나 대출이 어려운 기업에 부동산 등의 고정자산을 담보로 하지 않고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에 기업의 배당우선주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을 받는 금융기법임.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참여 증가로 선박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었으나, 최근 다시 민간펀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조성제, 2013)

〈표 II-24〉 연도별 선박펀드 현황

(단위 : 개, 조원)

구분	합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펀드수	131	17	17	15	13	11	21	18	12	7
(민간)	(91)	(17)	(17)	(14)	(11)	(10)	(1)	(8)	(6)	(7)
펀드규모	8.6	1.0	1.1	0.6	1.0	1.3	0.8	1.0	0.7	1.1
(민간)	(6.7)	(1.0)	(1.1)	(0.5)	(0.8)	(1.1)	(0.0)	(0.6)	(0.5)	(1.1)

주: 2012년은 6월 기준, 민간펀드는 구조조정펀드와 해경합정 신조형 펀드를 제외
 자료: 해양수산부

□ 국내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확대 필요성 증가

- 국내 해운업과 조선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상황에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공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선박금융의 활성화 및 발전이 필요함
 - 해운업과 조선업은 자본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 거대한 자금수요를 동반하며, 글로벌 경기상황에 매우 민감한 산업이기 때문에 경기순환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선박금융이 필요함
- 선진 해운·조선업 강국들은 선박대출을 지원하는 선박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국의 선박 및 자본재 수출을 지원하고 있음
 - 선박금융대출 규모로 살펴보면, 2011년 기준 노르웨이 Dnb NoR 은행이 491억 달러 규모로 가장 크며, 뒤를 이어 스웨덴 Nordea 은행 459억 달러, 네덜란드 ING 244억 달러, 미국 씨티은행 203억 달러 수준
 - 일본 미쯔비시 UFJ 은행뿐만 아니라 중국도 중국은행을 통해서 자국의 조선소에 발주를 하는 외국 선주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조선업시장에서는 세계 1위를 하고 있으나, 세계 선박금융시장의 점유율은 매우 미미함
 - 국내 민간금융기관의 경우 자산규모, 금융기법, 외화자금 조달경험 등 측면에서 장기 거액대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

- 공적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경우 자금조달이나 대출기법 등에 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비교적 활발하게 선박금융을 취급하고 있으나 지원규모가 충분하지 못함
- 조선업 세계 1위, 해운업 세계 5위라는 국제적 위상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박금융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자국의 해운선사에 대한 강력한 지원 및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은 중국공상은행을 통해 150억 달러 규모의 대출과 14억 달러 규모의 채권발행을 단행하였으며, 세계 최대 선사인 덴마크의 머스크는 62억 달러의 대출을 지원받았으며, 프랑스 CMA-CGM은 15억 달러 규모의 은행대출에 대한 정부보증을 제공받았음
 - 최근에는 은행에서 선박을 보유하고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KAMCO, 산업은행 등에서 펀드를 조성하여 선박을 구입하여 해운기업의 유동성을 제고해 줄 필요가 있음

〈표 II -25〉 주요 국가 해운업계 금융지원 사례

국가	대상	지원내용
중국	COSCO	중국공상은행 150억 달러 신용대출 5년 만기 14억 달러 채권 발행
	CSCI	중국인민은행 7억 달러 신용대출
덴마크	Maersk	62억 달러 대출 지원
독일	Hapag-Lloyd	17억 달러 정부 지급보증 제공
싱가포르	NOL	10억 달러 규모 자금 지원
프랑스	CMA-CGM	15억 달러 은행대출 정부보증 제공
인도	해운업계	21억 달러 자국선주 신용대출
이스라엘	ZIM Line	정부가 지급보증 제공

자료: 선주협회(여대웅, 2013) 재인용

- 선박금융을 전담하는 금융기관을 부산금융중심지에 유치하여, 국내 선사들이 자금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산은 인근에 조선업 및 해운업이 집적되어 있어 선박금융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하며, 이 때문에 선박금융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었음

□ 선박금융의 향후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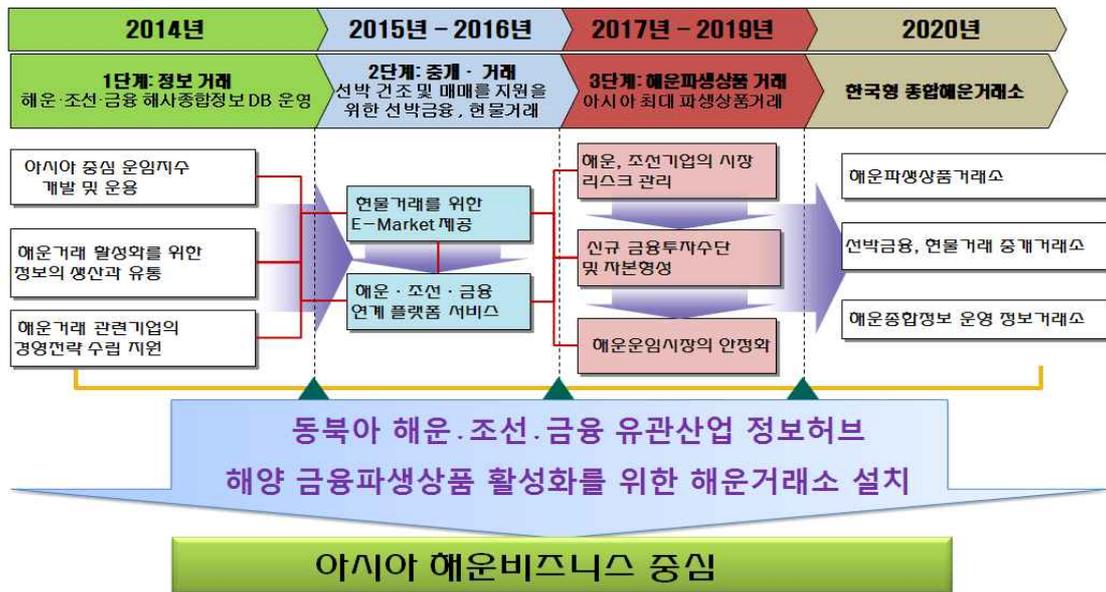
○ 선박전문금융기관의 설립을 통한 효율적인 선박투자 활성화

- 선박관련 산업(조선·해운)은 대규모 장치산업일 뿐만 아니라 경기에 민감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를 완충할 수 있는 선박금융의 역할이 필수적임
- 국내 선박금융의 경우 호황기에 선박투자를 확대하고 불황기에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선박을 매각함으로써 손실을 입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선박업계와 정책당국간 선박전문금융기관 설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한국선박금융공사법안(2012.7.6.) 및 한국해양금융공사법안(2013.3.5.)이 각각 국회에 발의된 바 있음
- 하지만 정부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유보하는 대신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의 선박관련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여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선박금융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선박전문금융기관의 조속한 설립을 통하여 경기 순응적인 금융지원에서 탈피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통하여 경기 대응적인 선박금융 및 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선박금융의 육성은 부산 금융중심지의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부산금융중심지 인근에는 조선 및 해운업이 집적되어 있고, 부산국제금융센터(Bus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BIFC)는 조선 및 해운산업이 선박금융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
- BIFC의 경우, 지정학적 입지여건 및 선박금융 특화전략을 바탕으로 비교우위를 극대화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동아시아 지역에서 선박금융의 선발주자로 발전한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경쟁 및 협력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와 연계된 동아시아 선박금융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면 국제적으로도 보다 경쟁력 있는 선박금융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부산금융중심지 및 한국 금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선박금융의 수요자인 해운선사를 부산으로 적극 유치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하여 해운비즈니스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해운거래소를 설립하여 선박거래를 활성화하면 부산금융중심지에서 선박금융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부산금융중심지가 해양금융의 동북아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몇몇 금융기관의 유치 및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며, 선박거래, 선박금융, 선박해운보험, 운임선물, 화물중개 등의 분야를 공간적·기능적 측면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해운 클러스터의 구축이 필요함
- 해운거래소를 설립하여 부산에 유치함으로써, 부산에서의 해운비즈니스클러스터 형성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운거래소는 부산금융중심지의 선박금융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므로, 상호 시너지효과를 나타내며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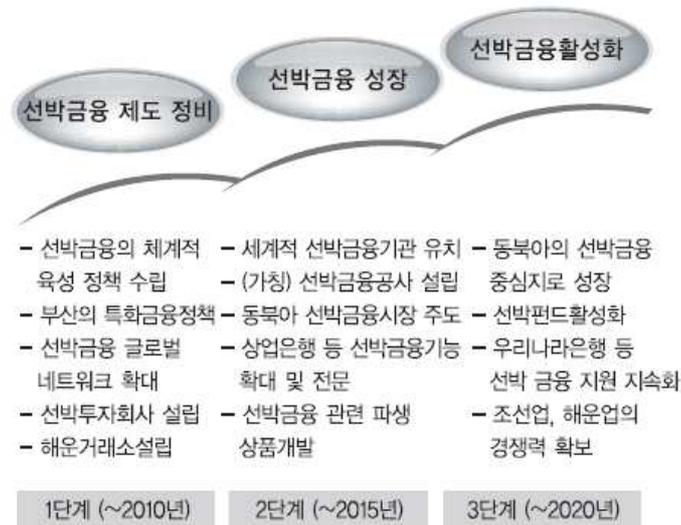
자료: 해운거래정보센터

<그림 II-11> 한국형 해운거래소 추진 계획

- 부산금융중심지는 선박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럽 등 선박금융업이 발달한 국가의 선박금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선진 선박금융 기법의 습득과 선박금융 결제통화인 달러자금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내 민간금융기관의 경우 자산규모, 금융기법, 외화자금 조달경험 등을 볼 때 선박금융을 독자적으로 주관하기에는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공적금융기관 외에 해외 선진 선박금융기관을 유치함으로써 부산금융중심지의 위상에 걸 맞는 선박금융시장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해외 선박금융기관의 부산 유치는 부산이 선박금융 중심지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금의 수요자인 해운기업의 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음
 - 해외 금융기관이 다수 부산에 입지할 때 부산의 선박금융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부산이 선박금융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 명성을 얻는 데도 기여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선박금융의 역량이 뛰어난 금융기관을 먼저 유치하고 난 후 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홍콩, 싱가포르와 차별화할 수 있는 부산의 발전전략을 세워 경쟁관계에 있는 선박금융 도시와의 차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선박금융의 자금조달 촉진, 선박금융시장 확대를 위해 국내 여건에 적합한 선박금융기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국내의 경우 선박금융의 주요 방법인 신디케이트론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민간은행은 자금조달을 위한 국제금융 노하우 부족, 장기리스크 관리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신디케이트론을 통한 선박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음
 -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P-CBO 제도 등 회사채시장을 통한 선박금융 자금조달, 신디케이트론의 유동화 등 장기채권시장을 통한 선박금융시장 확대 방안을 연구할 필요 있음(조성제, 2013)
 - 선박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선박펀드, 유가증권 펀드, 부동산 펀드 등)을 묶은 합성펀드의 개발, 자산운용사의 선박펀드 진출 확대 등을 통한 선박금융 활성화 방안도 연구할 필요 있음(조성제, 2013)
- 해양클러스터와 금융중심지간의 상호 연계 지원정책
- 선박금융기관이 부산금융중심지로 이전을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고객과의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것임

- 현재 부산에서 동삼혁신지구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해양클러스터를 연구중심 클러스터에서 산학관련 중심 클러스터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부산의 해양클러스터에 위치한 해운 및 조선 관련 업체가 부산금융 중심지의 선박금융기관과 상호 연계하여 상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부산금융중심지에 입주한 선박금융기관과 해양클러스터 입주 업체와의 금융거래가 지속될 경우 부산금융중심지에서 부여하는 혜택을 연장 또는 지속시켜 주는 지원정책이 수립된다면, 초기 부산금융중심지와 해양클러스터의 상호 보완적 시스템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임



자료: 이기환(2008)

<그림 II-12> 선박금융 발전을 위한 단계별 전략

3.2. 파생금융시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생금융시장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유발한 주요 원인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 방안이 논의되었음

- 2008년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 및 AIG의 신용디폴트스왑(credit default swap) 문제 등 파생상품시장 문제가 불거진 이래로 헤지펀드 등 일부 투기적 투자자에게는 원유 등 상품선물 투자에 포지션 제한을 가하고, 헤지 목적이 아닌 신용디폴트스왑을 금지하거나 제한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내파생상품은 주식시장 변동성 증가로 인하여 급증하였으나, 이자율, 통화, 신용 관련 장외파생상품은 큰 폭으로 감소(금융투자협회, 2011)

□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중앙청산소(CCP) 필요성 증대

- 2009년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장외파생상품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가 논의되면서,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 Party, CCP)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됨
- 2012년말까지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나 전자거래플랫폼(electronic trading platform)에서 거래가 체결되고 CCP를 통해 청산되어야 하며, 거래관련 정보가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에 보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규제안의 주요 내용임
- 외국의 경우, 미국, 영국 등 G8 국가들뿐만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국가에서도 이미 장외파생상품 CCP가 설립되어 운영 중
-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뉴욕상업거래소(NYMEX)는 IRS·CDS·NDF와 같은 파생상품과 에너지파생상품의 청산·결제를 맡고 있고, 싱가포르거래소(SGX)도 원유나 해상운임협정 등 28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1년부터 청산소를 운영 중임

〈표II-26〉 주요국 CCP 서비스 제공 현황

구분		청산기관	주요청산대상 상품(도입시기)
미국		CME	CDS(`09), 상품(`02), IRS(`10), NDF(`12)
		IDCG	IRS(`08)
		ICE Clear	에너지(`07), CDS(`09)
유럽	영국	LCH. Clearnet	IRS(`99), CDS(`10), NDF(`11)
	독일	Eurex Clearing	CDS(`09), IRS(`12)
아시아	일본	JSCC	CDS(`11), IRS(`12)
	싱가포르	SGX	상품(`06), 해운(`06), IRS(`10), NDF(`11)
	홍콩	HKEx	IRS(`12), NDF(`12)

자료: 전희경(2013)

- 장외파생거래에서 나타나는 거래상대방 리스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CCP의 필요성이 증대하였음
 - 거래당사자간 양자 계약이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되면 중앙청산소가 거래자의 결제이행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 중앙청산소를 통해서 청산기관이 매도당사자에 대해서는 매수자, 매수당사자에게는 매도자가 되어 결제이행을 책임지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의 리스크 해소를 통한 장외파생상품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바젤협약 상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음



자료: 한국거래소(2011)

<그림 II -13> 일반 장외거래와 CCP 청산거래의 비교

- 장외파생상품 CCP의 시작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계기될 수 있음
 - 한국거래소가 겸영형태로 일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서비스 준비를 계획한 바 있음

- 2013년 하반기 원화 이자율스왑(IRS) 청산 서비스를 개시하고 CDS와 NDF로 확대할 예정
- CCP가 결제이행을 보장함으로써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가장 심각한 위험요소인 신용위험(거래상대방 위험)이 해소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을 줄일 뿐 아니라 일일정산 및 증거금제도 등을 통해 리스크 분산이 가능해 짐으로써 예상치 못한 장외파생상품 부실이 일시에 노출되어 단기간에 금융위기로 확대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이원일, 2009)

□ 파생금융의 향후 발전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 파생상품 위험관리 강화

- 향후 파생상품시장은 거래소시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
- 거래소시장 거래가 곤란한 경우 청산소를 통한 청산결제를 최대한 활용할 것임
- CME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OTC 런던 금 선도거래의 청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CDS(Credit Defaults Swap) 등의 OTC 청산 서비스도 2009년 12월 중순부터 시행하고 있음
- 거래소시장 및 CCP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 파생상품 거래시 노출된 위험에 대한 상호간 담보를 최대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모든 파생상품계약 형태를 보고하고 위험노출 포지션의 등록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현재 미국의 DTCC(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가 유일하게 등록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파생상품의 다양화

- 석유제품 가격변동 위험에 대한 관리수단으로써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 미래변동금리를 헤지할 수 있는 단기금리 선물시장 개설, 변동성위험에 대한 효율적인 헤지수단 및 투자상품으로서의 변동성지수 선물시장 개설, 국내경제의 위안화 영향력 확대와 이로 인한 위안화에 대한 효율적인 헤지수단으로서의 위안화 선물시장 개설 등 파생상품이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탄소배출권 현물시장 개설에 따른 탄소배출권 선물시장 개설, 해운·항만·물류·수산 등의 산업적 기반에 따른 해양파생상품,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기능을 활용한 기술파생상품, 이전기관(자산관리공사)을 활용한 구조조정시장에서의 구조조정 파생상품 개발도 필요함

○ 장내·외 통합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감독당국의 시장관리능력 제고

- 장내 및 장외를 아우르는 포괄적 거래정보의 생산이 가능하여, 시장전체 위험액 파악을 통해 금융위기 등과 관련한 선제적 대응을 지원할 수 있음
- 거래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구조화를 통하여 감독당국의 조기경보시스템 운용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즉 CCP 서비스를 통해 시장전체 리스크에 대한 효율적 정보관리 수단이 마련됨으로써, 감독당국의 위기대처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도입

- ATS 도입을 통해 거래소의 경쟁시스템 도입과 향후 국제적인 거래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 있음
- 세계 거래소시장은 ATS의 등장으로 유통시장내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전체 주식거래의 42%을 ATS가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는 30%가 MTF(Multilateral Trading Facility)로 처리되고 있음(한국자본시장연구원, 2012)
- ATS 도입은 유통시장내의 거래소 경쟁 촉진을 통하여 시장효율성을 증대시켜 매매체결 속도 향상, 호가단위 축소와 거래비용 절감, 증권회사의 기관투자자 서비스 역량 강화 등이 기대됨

Ⅲ.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정책 재조명

1.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정책 내용

□ 금융중심지 인프라 구축

- 정부는 금융산업을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중심지 정책을 추진해 왔음
- 정부는 한국투자공사 설립(2005. 7), 금융전문대학원 설립(2006. 3),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2008. 3),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개소(2008. 9, 2009. 5), 금융중심지 지정(200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2009. 2) 등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왔음
- 또 자산운용업에 특화하는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하여 자산운용시장의 육성과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자료: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그림 Ⅲ-1> 금융중심지정책의 비전, 목표 및 전략

○ 부산금융중심지의 지정과 인프라 구축

- 2009년 1월 해양 및 파생 특화 금융중심지로서 부산금융중심지(문현금융단지)가 지정됨
- 추진경과

'07. 12. 21: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제정 (복수 금융중심지 지정의 법적 장치 마련)

'08. 04. 10: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용역 시행(BDI)

'08. 04. 30: 정부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구성

'08. 09. 30: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위원회 발족

'08. 11. 14: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 ▷ 부산, 서울, 인천, 제주, 경기

'09. 01. 21: 금융중심지 지정대상지역발표(부산, 서울)

'09. 12. 21: 부산금융중심지개발계획(안) 승인(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10. 01. 06: 금융중심지 지정 고시(금융위원회)

- 부산국제금융센터(Bus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BIFC) 사업 개요

· 위치 및 규모 : 남구 문현동 1227-1번지 일원, 102,352㎡

· 시행자 : 부산도시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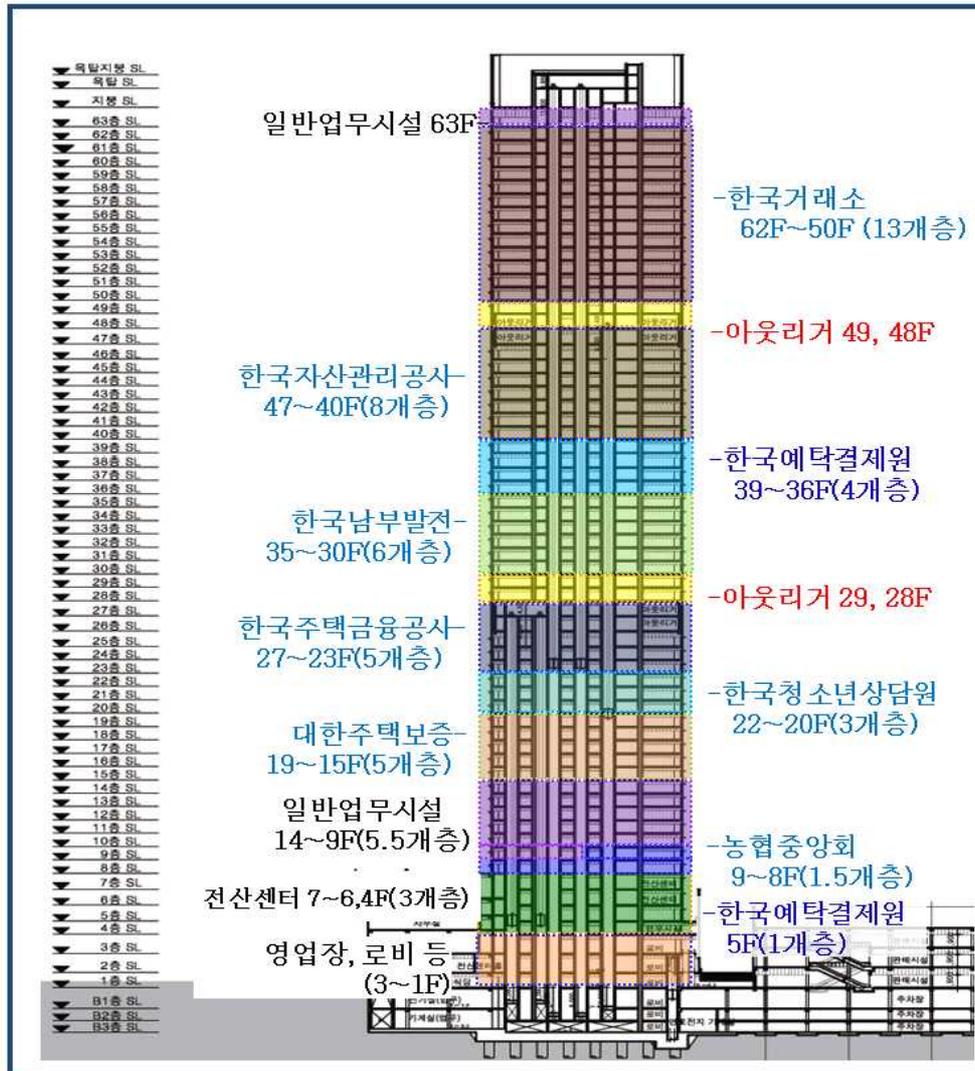
· 사업내용

▷ 복합개발 : 이전공공기관 6곳(한국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청소년상담원), KRX, 농협 부산지역본부

▷ 개별개발 :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

※ BIFC 층수 배치

○ 한국거래소: 50~62층	○ 한국자산관리공사: 40~47층
○ 한국예탁결제원: 36~39층	○ 한국남부발전: 30~35층
○ 한국주택금융공사: 23~27층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2층
○ 대한주택보증: 15~19층	○ 농협중앙회: 8~9층(2층 : 영업장)



자료: 부산광역시

<그림 III-2> 복합개발 사업 입주기관 층수 배치도

□ 추진조직: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금융중심지지원센터

○ 금융중심지지원센터(Fn Hub Korea)

-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8년 9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 진입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국내외 금융회사들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

- 주요 내용

- 외국 금융회사의 인허가 신청 지원 및 정보 제공
-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영업 관련 애로 건의사항 처리
- 해외진출 국내 금융회사의 애로 건의사항 처리
- 주요 해외 국가의 금융시장 및 법규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
- 해외 금융전문인력의 국내 금융회사 취업 채용 지원
- 외국계 금융회사 근무 외국인들의 거주 및 투자활동 관련 애로 사항 처리 등

- 조직

-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센터장, 부센터장, 3개팀(외국계금융사지원팀, 해외진출 지원팀, 금융환경개선팀) 및 부산금융중심지지원센터로 구성
- 해당 분야 전문 인력 배치 및 분야별 전담데스크 제도 운영
- 부산금융중심지지원센터 개소(2009. 5. 15): 부산금융중심지 조성 지원과 국내외 금융회사 부산 진입 또는 해외진출 지원 등의 업무 수행



자료: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그림 III-3>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조직도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개소

-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²⁾ 2008년 7월 해양·파생 특화금융중심지 기반 조성 및 금융기관 유치를 목적으로 설립
- 주요 내용
 - 금융중심지로의 발전을 위한 해외 홍보 및 금융기관 유치 활동
 - 국제금융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및 네트워크 구축
 - 지역내 금융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금융인력 양성 추진
 - 국제금융도시 추진을 위한 동향분석 및 연구조사사업
 - 부산시 금융산업과 정책기획업무 지원
- 조직
 - 센터장 외 연구원 3명으로 총 4명으로 구성
 - 2008년 개소 이후 (재)부산경제진흥원 위탁기관으로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업무 추진하였으나, 2013년 3월 근무지를 부산시청 금융산업과내로 이전(행정 및 시스템은 기존 부산경제진흥원에 의해 관리되고 근무지만 이전)

□ 각종 인센티브제도 운영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지원
- 부산시에서는 「금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2008. 12. 3)하여 금융중심지 입주 금융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함
 -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금 지원한도의 2배까지 우대지원
 - 부산시로 이전한 금융기관의 신규고용한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경비를 일부 지원
 - 금융기관 이전비용의 일부 지원
 - 기타 인허가 업무지원 등의 행정지원 서비스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자료: 부산시,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2) ※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5조 부산국제금융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무를 추진하고 금융기관의 유치 전략 수립·시행을 위하여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를 둔다.

○ 국·내외 금융기관이 BIFC에 창업(신설)하는 경우

국내 금융기관	
혜 택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소득 발생이후 법인세 또는 소득세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100% 감면 - 이후 2년간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限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경영을 위해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재산세 면제 - 취득세 50% 감면(2014년 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限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지·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100 이내 - 지원한도 5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60만원 이하(최대 6개월) - 지원한도 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개월간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60만원 이하(최대 6개월) - 지원한도 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10명 이상을 고용하기 위하여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외국 금융기관	
혜 택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소득 발생이후 법인세 또는 소득세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100% 감면 - 이후 2년간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限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경영을 위해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재산세 면제 - 취득세 50% 감면(2014년 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限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지·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100 이내 - 지원한도 5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국 이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 또는 한국 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60만원 이하(최대 6개월) - 지원한도 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개월간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60만원 이하(최대 6개월) - 지원한도 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10명 이상을 고용하기 위하여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 설비의 설치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10/100 이내 - 지원한도 1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10명 이상 상시 고용하는 지역본부 및 지점

○ 부산시 역외 금융기관이 BIFC에 이전하는 경우

국내 금융기관	
혜 택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지·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100 이내 - 지원한도 50억원 	·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60만원 이하(최대 6개월) - 지원한도 2억원 	· 최근 3개월간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60만원 이하(최대 6개월) - 지원한도 2억원 	· 내국인 10명 이상을 고용하기 위하여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외국 금융기관	
혜 택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지·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100 이내 - 지원한도 50억원 	· 3개국 이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 또는 한국 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60만원 이하(최대 6개월) - 지원한도 2억원 	· 최근 3개월간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60만원 이하(최대 6개월) - 지원한도 2억원 	· 내국인 10명 이상을 고용하기 위하여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2.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실적 평가

2.1.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의 긍정적 부분

□ 금융중심지 관련 법·제도 정비

○ 금융중심지 조성·발전에 관한 법률(금융중심지법) 개정

- 2007년 12월 제정된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에 관한 법률은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추진상황

- 2007. 12. 21: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 2011. 09. 30: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2012. 04. 01: 법률 시행
- 2012. 04. 10: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 2012. 04. 15: 시행령 시행

-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금융전문인력 양성: 정부는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금융관련 기관 및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 할 수 있게 함
- 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 상호 진출 지원: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 금융기관 국내 진입 등을 위한 여건 개선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자금 지원 기준을 마련: 금융중심지로 신규진입하는 데 필요한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그 밖에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 등에 필요한 자금 등
- 시·도지사에게 대한 국가의 자금지원 기준 마련
-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 의의 : 금융중심지 내 금융기관 집적 및 유치에 관한 국가지원의 근거가 마련

○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 부산시는 2008년 11월 「금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부산금융중심지 입주 금융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추진상황

- 2008. 11. 13: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공포
- 2011. 07. 13: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 2012. 12. 26: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 주요 내용

- 입지보조금 지원(개정 2011. 07. 13, 2012. 12. 26): 금융기관이 부산시로 이전(신설하는 경우 포함)하기 위하여 용지 및 건축물을 분양 또는 매입·임차·신축하는 경우 입지보조금 지원 가능
- 고용보조금 지원(개정 2011. 07. 13): 금융기관이 부산시로 이전(신설하는 경우 포함)하여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고용보조금 지원 가능
-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개정 2011. 07. 13, 2012. 12. 26): 금융기관이 부산시로 이전(신설하는 경우 포함)하여 신규고용 한 직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가능
- 사업용 설비의 설치자금(신설 2012. 12. 06): 금융기관이 창업 등을 통하여 금융중심지로 신규 진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설비의 설치자금 지원 가능
- 그 외 금융중심지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 우대지원,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 시 교육훈련경비 일부 지원, 지방세 감면 및 행정지원 등 각종 지원책이 마련

〈표Ⅲ-1〉 부산금융중심지 보조금 지원 대상과 규모

항 목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한도
입지 보조금	- 외국 금융기관 : 3개국 이상을 관장 하는 지역본부 또는 한국본사 - 국내 금융기관 :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본사	용지·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100분의 50 이내	50억원
고용 보조금	- 외국 및 국내 금융기관 : 최근 3개월간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관	1인당 60만원 이하 (최대 6개월)	2억원
교육훈련 보조금	- 외국 및 국내 금융기관 : 내국인 10명 이상을 고용하기 위하여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1인당 60만원 이하 (최대 6개월)	2억원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 외국 및 국내 금융기관 : 내국인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기관의 지역본부 또는 지점	사업용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10 이내	10억원

자료: 부산광역시

□ 부산금융중심지 기반조성 및 사업추진

- 부산시는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은 이후 주요 전략사업으로 금융중심지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여러 부문에서 사업추진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조성
 - 금융중심지 집적여건 마련을 위해 문현금융단지 안에 BIFC를 조성함
 - 사업개요: 부산국제금융센터 조성사업, 102,352㎡, 2008년~2015년
 - 의의 : 금융서비스업 중심도시로서의 기반 마련, 국제금융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특화금융산업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함
- 선박금융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
 - 2011년 8월 해운거래정보센터 설립: 해운시장의 거래 및 정보의 중심지 조성, 선박금융 중심지 활성화
 - 현재 국책은행(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선박금융부서 이전 및 선박금융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선박운용회사 유치: 한국선박금융(주), 캄코선박운용(주) 등
- 선물회사 및 금융IT 기업 유치 추진
 - 유치대상: 선물회사, 금융IT기업, 이전공공기관 전산유지업체
 - 추진계획
 - 2013년 상반기: 선물회사, 금융IT 기업 등 유치활동 추진
 - 2013년 하반기: 이전 공공기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업무 유치활동
- 특화금융 기반 조성 노력
 - 파생상품 R&D센터 설립(2012. 2): 파생상품 전문 연구기관
 - 파생상품 시스템 접속장비(라우터) 정상가동(2012. 6):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
 - 중앙청산소(CCP) 유치: 자본시장통합법 개정(2013. 2)으로 CCP 설립 근거 마련에 따라 KRX 파생상품시장본부 내 설립 추진

□ 금융중심지 이미지 제고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부산금융중심지 선정 이후 금융관련 국제행사 개최 및 유치로 통해 해양·선박 금융중심지로의 부산의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

〈표Ⅲ-2〉 국제행사 개최 및 유치 내역

구 분	행 사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부산국제탄소금융포럼 - 2010부산국제금융세미나 - 2010부산국제금융박람회 - 제6차 부산국제금융컨퍼런스 - 제4회 한국선박금융포럼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부산국제탄소금융포럼 - 2011부산국제금융세미나 - 2011부산국제금융박람회 - 제7차 부산국제금융컨퍼런스 - 제6회 한국선박금융포럼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계감독기구 정기총회 - 2012부산국제금융세미나 - 제7회 한국선박금융포럼 - 2012 부산국제탄소금융포럼 - 제8차 부산국제금융컨퍼런스 - 2012부산국제금융박람회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MA(세계옵션시장협회)총회 - 부산금융중심지 해양·선박금융 컨벤션 - 세계해양포럼 개최 - 제9차 부산국제금융컨퍼런스 - 2013 부산국제금융세미나 - 2013 부산국제금융박람회 - 2013 부산국제탄소금융포럼 - FIA부산컨퍼런스 개최 - 2013부산국제금융세미나 - 한국선박금융포럼(코마린 공동개최) - ACSIC(아시아신용보증기관연합)총회

- 파생금융상품·선박금융 중심지 홍보 및 외국 금융회사 유치를 위한 해외 IR 추진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해외 금융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 매년 2회의 해외 IR 개최를 통한 부산금융중심지 조성 홍보와 외국 금융회사의 유치를 위해 노력: 2009년(홍콩, 싱가포르), 2010년(노르웨이 오슬로,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후쿠오카), 2011년(독일 함부르크, 미국 뉴욕), 2012년(호주 시드니, 미국 시카고), 2013년(영국 런던, 중국 상하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표Ⅲ-3〉 해외 IR추진현황

기간	국가·도시	주요내용	비고
	10회	MOU 4건	
'09.11.16 ~11.21	홍콩, 싱가포르	-금융기관 초청 설명회 -금융기관 개별면담 -칼리온은행 양해각서체결 (국제 선박시장 및 해상운송산업의 동향, 선박금융의 구조, 선박 금융관련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노하우 제공)	금감원, 서울시 합동추진
'10. 5.24 ~ 6. 1	노르웨이, 파리	-오슬로 선박금융포럼참가 -선박금융기관 개별면담 -오베오사 양해각서 체결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를 위한 협력 및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자문)	금감원 합동추진
'10.11.30 ~12. 2	동경, 후쿠오카	-금융기관 초청 설명회 -금융기관 개별면담 -후쿠오카현중소기업경영자협회 양해각서 (큐슈지역의 금융기관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로 진출 협력)	“
'11. 2.21 ~ 2.27	함부르크, 런던	-함부르크 선박금융포럼참가 -선박금융기관 개별면담	“
'11.11. 7 ~11.11	뉴욕	-파생금융기관 초청설명회 -파생금융기관 개별면담 -뉴욕한인경제인협회 양해각서 체결 (뉴욕지역 금융관련 기업과 투자개발, 무역업의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진출지원을 위한 상호 경제협력, 기업 간 투자교류 협력)	“
'12. 5.21 ~ 5.26	시드니	-금융기관 초청 설명회 -금융기관 개별면담	KOTRA 합동추진
'12.10.21 ~10.27	시카고	-금융기관 초청 설명회 -금융기관 개별면담	금감원 합동추진
'13.6.23 ~6.29	런던	-국제파생상품엑스포(IDX)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 -금융기관 개별 면담	“
'13.10.21 ~10.24	상해	-부국기금, 국태군안증권 양해각서 체결 -금융기관 초청 설명회 및 개별 면담	“
'13.12.10 ~12.13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금융연합회 양해각서 체결 -금융기관 개별 면담	

※ IR 10회, 양해각서 체결 7건

- 그 외 부산국제금융세미나, 부산국제탄소금융포럼, 한국선박금융포럼, 한국과생상품포럼, 부산국제금융컨퍼런스, 부산국제금융박람회 등 개최 통한 네트워크 구축

□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 금융산업은 지식기반산업(knowledge-based industry)으로 지식창출과 인력 양성 및 활용이 중요한 산업인 만큼, 부산금융중심지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
 - 금융전문교육기관의 유치 및 설립을 추진하고,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함
- 금융전문교육기관 유치 및 설립 추진
 - 부산금융전문대학원 유치 추진 : 부산이 국제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신규 금융전문인력 양성

※ 개요

- 개원 : 2014년 9월 예정(가을학기)
- 장소 : 부산국제금융센터 63빌딩 내
- 규모 : 최소 30명(2018년 200명) 정원
- 과정 : 학위과정(Full Time 또는 Part Time) 및 비학위과정

<표Ⅲ-4> 부산금융전문대학원 추진 상황 및 계획

일정	추진상황 및 계획
2009. 12	▷ 부산금융중심지 개발계획으로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을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이하 금융위)에서 심의·확정
2010. 09	▷ 금융위원회 KAIST 금융전문대학원 부산분원 설립 제안
2012. 06	▷ 금융전문대학원 분원유치 실무협의
2012. 09	▷ 금융전문대학원 부산분원 설립 세미나 개최
2012. 12	▷ 부산분원 장기발전 용역비 반영(정무위)
2013. 03	▷ KAIST 부산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내부방침 확정
2013. 04	▷ KAIST 부산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대통령 업무보고(금융위)
2013. 06	▷ 금융위, 기재부 부산금융전문대학원 설립 용역 및 공모 협의
2013. 07	▷ 부산금융전문대학원 설립계획 용역(KAIST 발주)
2013. 11	▷ 부산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대학 공모(기재부 요구사항)
2013. 12	▷ 부산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대학 결정
2014	▷ 부산금융전문대학원 설립

자료: Inside 부산금융(2013)

- 부산국제금융연수원 설립 추진 : 추후 부산금융중심지 내 금융기관 집적화에 하여 늘어나는 금융전문교육 수요를 충족

※ 개요

- 개원 : 2015년 중
- 장소 :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 추진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공동 운영

〈표Ⅲ-5〉 부산국제금융연수원 추진 상황 및 계획

일정	추진 상황 및 계획
2012. 09	▷ 5개 협회장과 김정훈 정무위원장 면담을 통한 연수원 건립 합의
2012. 10	▷ 부산국제금융연수원 설립 방안 협위(정무위원장)
2013. 03	▷ 연수원 설립 TF팀 구성(정무위원장실 주관)
2013. 06	▷ 연수원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정무위원장실 주관)
2013. 07~	▷ 부산국제금융연수원 설립 종합계획 수립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2014	▷ 연수원 설립 행정 절차 이행
2015	▷ 연수원 설립

자료: Inside 부산금융(2013)

- 금융일반 및 특화금융 지식을 보급하고 미래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연구회 육성 사업을 수행함

〈표Ⅲ-6〉 금융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

구분	부산지역 금융실무자 순회교육	부산특화금융 아카데미	선박금융 아카데미	
주관	금융투자협회, 보험연수원, 금융연수원	부산경제진흥원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한국해양대학교, 금융연수원, 해사문제연구소	
수강대상	금융기관 실무종사자	일반시민	조선/해운업체, 금융기관 선박금융 실무종사자	
운영과정	글로벌 파생상품 전문가, 해상보험 전문가, 국제금융전문가 과정 등	선박금융과정, 파생금융과정	선박금융 관련	
추진 현황	2010년도	4개 과정 총 116명 수료	총 38명 참가	총 35명 수료
	2011년도	2개 과정 총 39명 수료	총 48명 참가	총 18명 수료
	2012년도	5개 과정 총 151명 수료	초급 및 고급과정 개설 총 106명 참가	총 19명 수료
	2013년도	2개 과정 진행 및 3개 과정 개설 예정	선박금융 및 파생금융과정 분리 개설 총 86명 참가	9월 개최

자료: Inside 부산금융(2013)

- 현재 부산지역 금융실무자 순회교육, 부산특화금융아카데미, 선박금융아카데미 등이 운용되고 있음
- 또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부산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산선박금융연구회를 결성, 현재 9기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부산·울산·경남 지역 대학생증권동아리연합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추진기관: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2.2.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의 부족한 부분

□ 중앙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 미흡

- 정부는 2009년 부산을 서울과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이후에는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사업 추진을 부산시에 미루고 정책적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주요국의 국제금융센터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의지에 힘입어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싱가포르·홍콩·두바이·상하이 등 아시아 지역에서 금융중심지를 조성했거나 추진중인 도시들에는 모두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었음 (조용범·성유림, 2013)
 - 홍콩과 싱가포르는 중앙정부 주도의 행정절차 간소화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최소화를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무차별 및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내·외국 금융기관에 동일한 업무환경을 조성했음
 - 두바이의 경우 두바이국제금융센터청(DIFC Authority)을 설치하여 센터내 입주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업무추진 및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법인세 면제 및 금융소득 비과세와 같은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 부산금융중심지 추진 주체가 부산시 금융산업과,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부산경제진흥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중앙정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그 기능도 미약한 수준임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는 조직이 센터장 포함 총 4명의 적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활동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역시 한시적 조직이라는 인식하에 예산 제약,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활동에 제약이 있음

○ 정부는 금융산업이 단순히 제조업을 지원하는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육성 및 정책지원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과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안)에 대한 검토

- 우리나라 해운·조선사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부산의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박금융공사와 같은 선박금융의 핵심적 인프라가 필요함
 - 전통적으로 해운·조선업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유럽 국가들 중에는 선박금융에 특화된 금융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독일 KfW IPEX Bank는 연방정부 소유기관 이고, 독일 HSH NordBank는 지방정부 소유 금융기관임
 - 노르웨이 DnB NOR Bank 및 덴마크 Danish Ship Finance는 정부가 주요 주주임

〈표 III-7〉 해외 주요 선박금융기관의 특성

구분	DVB	Danish Ship Finance	Deutsche Schiffsbank	HSH Nordbank	DnB NOR Bank	KfW IPEX Bank
선박금융 규모(원)	약15조	약9.8조	약24조	약52.7조	약29.5조	약21.1조
총대출 중 선박금융 비중	53%	100%	85%	17.1%	16.4%	22.1%
지배구조	DZ은행이 주식의 96%소유	은행권40.4% 중앙은행18.9% 선주권20.2% 등	Commerz은행 92%소유	함부르크시11% 쉬레스빅홀스타인 주정부 11% 주정부펀드64% 등	노르웨이정부34% 저축은행 재단 10%등	연방정부 소유
자금조달	은행차입41.0% 고객예금25.6% 채권발행20.1%	채권발행74.2% 중앙은행 차입9.8%	은행차입35.6% 고객예금35.5% 채권발행19.3%	채권발행30.4% 고객예금28.5% 은행차입22.1%	고객예금39.5% 채권발행27.1% 은행차입20.0%	신탁예금46.9% 은행차입 43.4%
특징	해운·항공·운운 등 교통분야 특화은행	국책은행, 보험사, 해운조선사 출자의 선박특화금융기관	선박전문은행	지방정부 소유의 선박은행	국가주도은행	국가은행
국가	독일	덴마크	독일	독일	노르웨이	독일

자료: 이기환(2010)

- 부산시,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대선 공약화하는 데 성공하고, ‘한국선박금융공사법안’ (이진복의원 대표발의), ‘한국해양금융공사법안’ (김정훈의원 대표발의) 등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대선 이후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평가가 많음
 - 정부는 선박금융공사 설립 대신,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부서를 부산으로 옮겨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립 운영할 계획을 발표함(2013. 8)
 - 하지만 선박금융공사와 같은 중심기관의 설립이 아닌, 일부 부서의 이전이므로, 참여기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어 부산에서 지속적인 선박금융 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 또한 자금운용과 같은 주요 사항에 관한 자체의 결재권이 없고 업무 운영에 대한 독립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선박금융 기업으로서의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기 어렵고 경영 관련 노하우가 축적되기 어려움
 - 인력 면에서도 해양금융종합센터 근무자는 서울 본사의 인사정책에 따라 순환 배치되는 직원이므로,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선박금융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기대하기 어려움

□ 경쟁력 있는 세제·재정 인센티브제도 미흡

- 최근 금융중심지법 개정으로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 혜택이 규정되어 있으나, 적용요건 및 대상이 매우 제한적임
 - 법인세와 소득세 혜택대상은 부산금융중심지 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금융기관(금융업·보험업에 한정, 투자금액 20억 이상 상시고용인원 내국인10명 이상인 경우)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간도 5년(최초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에 불과함
 -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해서는 15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로 세금 공제 및 감면이 가능하나, 현재 취득세는 2014년 12월말까지 50%를 감면하고, 재산세는 3년간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음
- 부산금융중심지를 진정한 금융특구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관련 법률적·제도적 근거가 불충분함

- 부산시가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서 「금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2008. 11. 13)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였으나 외국 금융기관을 유치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 예를 들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훈련 보조금의 경우, 지원 규모는 국내·외 금융기관 모두 1인당 60만원 이하(최대 6개월), 지원한도 4억원으로, 내국인을 10명이상 고용하기 위하여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음
- 외국 금융기관이 내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국내 금융기관이 내국인을 고용한 경우에 비해 해당 기관의 업무시스템 등을 익히는 데 더 많은 교육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외국 금융기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관련부문과의 연계 지원체계 미흡

- 부산은 세계적인 컨테이너항만이 입지해 있고 파생상품거래를 위한 거래소(KRX)가 소재하는 등 국제금융중심지 조성에 유리한 환경적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기관들에게 국제적 기준으로 통용되는 영미법 체계의 사법체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국제금융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함
 - 현재 국제금융거래 계약서상 준거법은 대부분 영미법 체계를 따르고 있음
 - 싱가포르가 아시아 대표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었던 주요 기반 중에는, 영국 식민지를 거치면서 1965년 독립 이후에도 기존 법률체계를 유지하여, 오늘날 국제적 기준인 영미법 및 상거래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부산의 경우 산업 전반의 위축과 대기업 본사의 부재로 대규모 자금수요가 크지 않고, 북한 핵문제나 노사분규 등 정치적·사회적 리스크 요인이 있는 등 영업환경이 좋지 못함
 - 런던, 뉴욕, 시카고와 같은 전통적인 금융중심지는 산업활동이 활발하고 주요 대기업의 본사가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풍부한 자금수요가 있는 등 유리한 영업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외국 금융기관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 외국인 거주를 위한 도시 인프라가 미흡함

- 김해국제공항은 취항노선이 부족하고 화물처리능력이 제한적이어서 금융중심지를 뒷받침할만한 국제공항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
 - 지역 전반의 영어사용 능력이 낮고, 외국 금융기관 임직원 가족들을 위한 외국인학교가 부족한 등 외국인 거주를 위한 생활 여건이 충분치 못함
- 부산지역 소재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하고, 국제화된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할 수 있는 대학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3. 선진 국제금융센터의 성공추진 사례 및 최근 변화

3.1. 주요 국제금융센터의 성공추진 사례

□ 런던

- 런던 금융시장은 200여년 전통의 국제금융시장으로 1690년대 설립된 영란은행(The Bank of England), 왕립 증권거래소(The Royal Exchange)가 런던 금융시장의 제도적 기반임
- 1986년 국제증권거래소를 설립하는 등 영국정부의 대대적인 금융개혁(금융빅뱅)을 통해 국제금융도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
 - 영국정부는 1986년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을 제정하고, 수수료 자유화와 겸업 허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빅뱅 프로그램을 추진함
 - 금융빅뱅의 주요 내용은 매매수수료 자유화, 증권업자 자격제도 완화, 증권거래소 회원국 개방, 주식거래세 인하 등임
 - 금융빅뱅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됨에 따라 증권거래가 증가하고 외국자본 및 금융기관의 영국 진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지위를 확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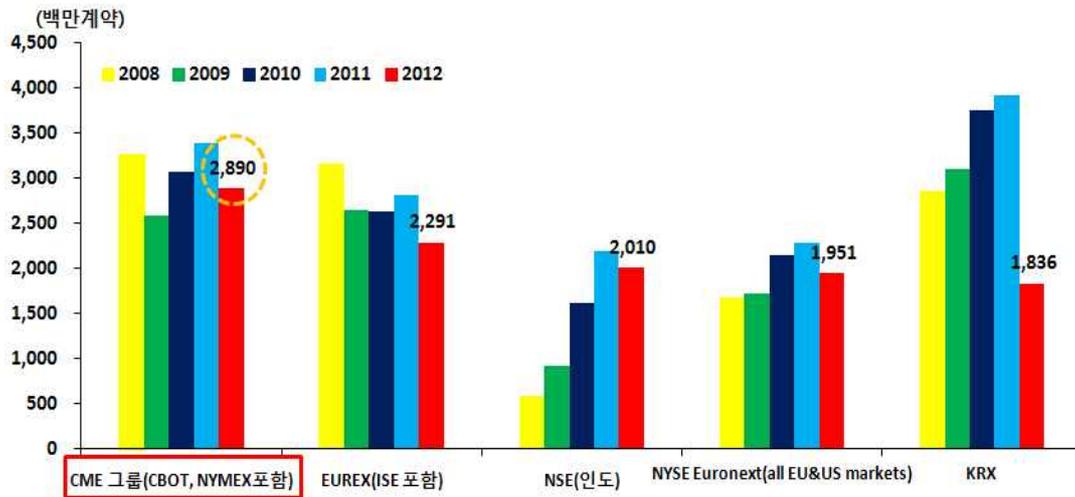
- 런던에는 킹스칼리지런던(King's College London), 런던정치경제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SE), 임피리얼칼리지런던(Imperial College London) 등 양질의 금융인적자원을 육성할 수 있는 유명한 단과대학들이 소재하고 있음

□ 뉴욕

- 과거 미국 금융의 중심지는 뉴욕이 아니라 필라델피아였으나, 1825년 이리운하(Eric Canal)가 개통되면서 뉴욕이 금융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 당시 이리운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월스트리트를 통해 조달하였으며, 물류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부가 금융자본으로 전환되었음
 - 뉴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튼우즈체제 하에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면서 국제금융시장으로 급속히 발전함
-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 중 하나이며, 나스닥(NASDAQ)은 등록기업이 가장 많은 장외거래소
- 뉴욕시립대학(City University of New York)을 포함하여 콜롬비아대학(Columbia University in the City of New York) 등이 우수한 금융인적자원들을 배출하고 있음

□ 시카고

- 시카고는 지정학적으로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물류 중심지로서 곡물, 육류 등 상품 거래시장이 크게 발달함에 따라 상품거래와 관련한 파생상품시장이 발달하였음
 - 물류 중심지이고 거래소가 입지한 부분은 부산과 공통되는 부분임
 - 1848년에 세계최대의 선물거래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설립, 1972년 시카고상업거래소(CME) 개설하여 통화선물거래 시작, 1973년에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시장변동성 지수 VIX를 거래하기 시작함. CME그룹(CBOT, NYMEX 포함)은 파생상품거래량이 2012년 기준으로 세계 1위 규모



자료: FIA(Futures Industry Association), 조용범·성유림(2013)에서 재인용

<그림 III-4> 주요 파생상품거래소 거래량

- 시카고대학 MBA(1위), 노스웨스턴대학 MBA(5위) 등 명문 경영대학원이 위치하여 고급 금융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음

□ 도쿄

- 도쿄 금융시장은 런던, 뉴욕과 더불어 세계 3대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있지만, 1990년대부터 일본경제가 침체하자 도쿄 금융시장의 성장도 둔화되고 있음
 - 1996년에 금융시장의 자유화와 개방화를 추진하여 금융빅뱅이 일어났으며, 외환거래의 자유화와 업종규제 철폐를 통해 금융시장을 개혁하고자 하였음
 - 하지만, 도쿄 금융 및 자본시장은 국제화 측면에서 뒤떨어지고 오히려 지역주의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 금융개혁의 한계를 노출함
- 이에 2007년 5월 기업법 개정을 통해 외국기업이 일본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 일본기업을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투자자보호 강화 등 새로운 개혁을 시행함

□ 싱가포르

- 영국의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국제적인 기준으로 통용되는 영국 법제 및 상업 거래 제도를 수용함으로써 영미계 금융기관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발전함
 - 1968년 런던의 역외금융시장인 ‘Euro-currency market’ 을 벤치마킹을 하여 ‘Asian dollar market’ 을 출범
 - 1973년 싱가포르증권거래소를 설립하고, 1984년 아시아 최초의 선물거래소인 싱가포르국제금융거래소를 설립함
- 싱가포르 정부가 효율적인 정책, 투명한 규제, 높은 대외개방도 및 낮은 규제비용, 선진화된 금융시스템 구축 등 외국 금융기관에게 유리한 업무환경을 제공함
- 싱가포르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17%의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금융상품 투자자에게 이자 및 배당소득, 자본이득에 대해 광범위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영국의 식민지를 경험한 때문에 국민의 영어 구사능력이 높은 편임. 그리고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려는 정책을 수행하여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많음
-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크게 강화하여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싱가포르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에서 금융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음

□ 홍콩

- 홍콩은 영국의 중국진출 교두보로 활용되면서 19세기 이후 국제무역항으로 발전하였으며, 중국정부는 홍콩의 주권 반환을 전후하여 금융제도를 개선하여 홍콩을 국제금융시장으로 육성시킴
 - 1993년 H주(중국 본토기업 주식)의 상장·거래를 홍콩에 최초로 허용하고, 2004년에는 홍콩 금융기관들에 대한 위안화 업무를 인가했으며, 2007년 홍콩에서 위안화표시 채권 발행을 허가

-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과 육로로 접해 있어 대중국 중계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홍콩을 통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크게 증가하는 등 중국과의 연계성이 높음
 - 2007년 현재 홍콩은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 시장에서 세계 2위이며, 중국기업들이 글로벌 증시로 나아가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KIEP, 2007)
- 홍콩 정부는 조세항목을 단순화시키고 낮은 조세체계를 유지하여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 금융기관에게 유리한 조세환경 제공함
 - 주요 세목은 이윤세, 근로소득세, 재산세로 단순하여 구성되어 있음
 - 이자 및 배당소득,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유지함
 - 금융기관의 역외금융에 대해서는 이윤세를 비과세함

	홍콩	한국
안정성	외환의 안정성 유지 자본이동, 이윤송금, 태환성 보장	자유환율제에 따른 외환의 안정성 취약 자본이동, 이윤 송금 신고 등 필요
자율성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자율성 보장 은행, 증권 겸영가능, 소자본 금융업 가능	자통법 시행 및 규제 완화, 투자자보호 강화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겸영 허용
투명성	회계의 투명성 및 법체계의 안정성 유지 철저한 자본주의시스템	국제회계기준 도입 추진 영미법과는 다른 법률 체계 보유
유연성	전문인력 풍부, 노동시장의 유연성 자격증 제도 및 금융인재 관리	헌법에서 노동3권 보장, 노동조합 강력 채용, 해고 및 복지에 대한 유연성 취약
조세	간편한 조세제도 및 낮은 세율 -법인세 16.5%, 금융소득세, VAT 면제	복잡한 지방세 항목 및 높은 세율 국제금융거래 조세 장벽 존재
국제언어	영어와 중국어 병용, 국제학교(70개) 및 영어교육 선진화	법률, 인허가 절차, 회의 등 영어 미사용 국제학교(5개), 영어사용인력 부족
편의성	Central에 금융환경 집중, 의료, 대중교통, 공항 접근성, 교육시설 등 우수	금융중심지 지정하여 인프라 개선 추진중 공항철도, 지하철 9호선 등 개봉
정책노력	위안화 역외금융센터로 발전, 이슬람금융 유치 및 상품선물시장 형성	자산운용시장 육성 및 헤지펀드 도입, 글로벌 플레이어의 출현 및 진입 여건 개선

자료: 최광해 외(2010)

<그림 III-5> 금융중심지 관점에서 홍콩과 한국 비교

- 영국의 오래 지배기간 동안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함으로써 금융분야의 글로벌 고급 전문인력에게 편리한 근무여건을 갖추고 있고 또 국제업무에 적합한 노동력 제공이 가능함
- 홍콩대학교(University of Hong Kong) 등 세계적인 대학에서 글로벌 금융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음

□ 상하이

- 중국경제가 2000년대 들어 연 평균 10%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하면서 상하이는 세계최대의 무역항으로 성장함
 - 일반화물 및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세계 1위(World Port Rankings, 2012)
- 제조업 수출중심의 고성장 과정에서 산업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대규모 실물거래와 관련되는 금융수요가 빠르게 증가함
- 상하이에 자본시장 관련 주요 거래소를 설립하고, 2009년 국제금융센터 육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중국 정부의 전략적 지원에 힘입어 상하이는 급속히 국제금융도시로 성장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상하이에 상하이 증권거래소(1990년), 외환거래센터(1994년), 전국은행간콜거래센터(1996년), 선물거래소(1999년), 금거래소(2002년) 등을 설립
- 상하이는 중국경제의 고도성장, 세계적인 항만시설 등에 힘입어 단기간에 국제금융센터로 부상하고 있지만, 낮은 수준의 금융개방도 및 금융자유화, 기업활동과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복잡한 행정 규제, 투자자 보호에 대한 법적 장치 미흡 등으로 인하여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는 데 한계를 보이는 측면도 있음
 - 최근 ‘금융산업의 혁신과 개방’ 이라는 기본목표 아래 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구(FTZ) 설치를 공표함에 따라 앞으로 역외금융을 본격적으로 취급할 것으로 보임

3.2. 성공추진 사례 벤치마킹

- 글로벌 금융중심지 육성에 성공한 도시들의 사례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에 역점을 두고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세제·재정 인센티브 강화 및 대상 확대

- 부산금융중심지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적 지원이며, 그 중에서도 세제·재정 지원 혜택에 대한 인센티브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조세지원 방식은 부산금융중심지가 문헌금융단지라는 지역적인 범위 내에 조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특구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문헌금융단지를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인 조세 혜택이 아닌 영구적인 조세 혜택을 부여할 필요 있음
- 특히 최근 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구(FTZ)의 출범으로 상하이 지역이 아시아의 대표 역외금융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부산금융중심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상하이FTZ 못지않은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상하이FTZ는 투자와 무역부문에서 원칙자유화(negative list) 방식으로 외국인 투자가능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세부과 및 각종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인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부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세제·재정 지원의 대상을 금융업과 보험업에 한정하지 말고, 백오피스 기능을 담당하는 IT 부문 등 금융중심지 관련 산업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여야함

□ 외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제도 개선

- 부산금융중심지가 국제금융센터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외국 금융기관을 얼마나 많이 유치하는가가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국제금융 부문과 국내금융 부문 간 차별적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싱가포르 정부의 경우, 금융부문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면서도 국내 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과 국내금융간 차단벽을 설치하고 차별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문헌금융단지에 입주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영업비용 절감을 위해 부동산 취득 및 사용, 금융 및 사회 인프라 이용 등에 있어서 각종 혜택을 최대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외국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 대한 경제적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문헌금융 단지 내에서는 금융 규제도 최소한으로 축소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역외금융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강구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 있음
- 계약, 법률 및 사법제도, 분쟁조정,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외국 금융기관의 업무활동에 적합하도록 영업환경을 개선할 필요 있음

□ 금융전문인력 양성

- 부산금융중심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정부 및 부산시 등이 국내기관의 금융전문인력 교육훈련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나, 금융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음
 - 싱가포르통화청(MAS)은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싱가포르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2.8억 미국달러 규모의 금융발전기금을 조성하여 금융전문가 양성 및 금융 인프라 개발 등에 지원하였음(조용범·성유림, 2013)
- 부산에 세계적인 금융전문교육기관(금융전문MBA) 분교를 직접 유치하거나, 이들 기관이 부산소재 대학과 연계하여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차별화된 어메니티(amenity) 제공

- 금융중심지를 육성하는 데 있어, 특화금융 시장과 같은 차별화된 시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국내·외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좋은 영업환경 및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함
 - 금융기관이 새로운 지점을 열거나 이전을 검토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규모 및 수요뿐 아니라 직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 치안, 의료, 교육 여건 등 도시 생활환경의 쾌적성을 고려하여 결정함
 - 따라서 부산이 국제금융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내·외국인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선진 도시환경이 갖추어져야 함

4. 부산금융중심지 육성계획 재조명

4.1. 부산금융중심지 기존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³⁾

□ 부산금융중심지의 비전 및 목표

- 부산금융중심지 비전 : 선박금융 · 파생금융 · 백오피스/백업센터 특화금융중심지
 - 금융중심지 관련 국내외 환경변화와 정책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부산이 보유하고 있는 비교우위 요소를 최대한 활용
 - 동북아 항만 로지스틱 허브, 주변의 선박건조회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선박금융 특화
 - 부산 소재 KRX를 중심으로 파생상품 틈새 공략을 통한 파생금융 특화
 - 자산운용을 중심으로 한 복합금융중심지 전략을 채택하여 서울과 상호 협력 · 보완하는 측면에서 비용 면에서 상대적인 강점이 있는 백오피스 및 백업센터에 특화
- 부산금융중심지의 목표
 - 선박금융 : 글로벌 시장점유율 3%, 아시아 시장 점유율 12% 내외
 - 파생금융 : 장내거래 세계 1위 유지, 장외거래 동북아 3위 진입
 - 백오피스 및 백업센터 : 은행 증권 보험 등 주요 금융기관의 금융 백오피스 자회사, 콜센터, 원격지 백업센터를 각 1개 이상 유치

□ 부산금융중심지의 추진방향과 추진과제 이행을 위한 로드맵

- 추진방향
 - 금융중심지에 필요한 제반 기반조성
 - 선박금융, 파생금융, 백오피스/백업센터 관련 비교경쟁우위 확보
 - 금융중심지 평판 확립을 위한 부산의 이미지 강화
 - 지역적 측면의 단계적 접근: 동북아시아 → 국제적 시장으로 확대

3) 부산광역시(2010) 내용을 기준으로 내용을 요약하고 검토함.

○ 추진과제 : 5개 부문 30개 과제

- 선박금융 및 수산금융 : 9개(선박금융전문기관 설립 등)
- 파생(신성장)금융 육성 : 5개(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등)
- 백오피스 및 백업센터 : 2개(백업센터·전산센터 구축 등)
- 금융중심지 기반조성·활성화 : 10개(금융특구 조성 등)
- 국내외 금융회사·기업체 유치 : 4개(동북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유치 등)

○ 추진과제 이행을 위한 로드맵: 과제의 시급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1단계 금융중심지에 필요한 제반 기반조성(2010년 ~ 2012년)

1. 추진방향

- 금융기관 집적을 위한 인프라 조성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제반 여건 조성
- 선박 및 파생금융 기반 조성
- 금융중심지 평판 확립을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 강화

2. 주요사업

(가) 금융기관 집적을 위한 인프라 조성

-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조성
- 금융전문인력 양성
 - . 선박금융전문대학원 설립 (한국해양대학교 내 금융 MBA과정)
 - . 국제 선박금융 아카데미 운영(부산시, 국토부, 해양대학교 등)
 - . 부산금융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파생상품전문가 과정, 해상보험 전문가 과정, 부산특화금융 아카데미 과정

(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제반 여건 조성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선박금융 세제 지원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한국선박금융공사법 제정 발의
-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 조례 제·개정
- 부산광역시세 및 구세 감면조례 개정

(다) 선박 및 파생금융 기반 조성

- 선박금융 기반 조성

- .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선박금융부서 부산 이전(수출입은행 등)
- .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한국선박금융공사)
- . 선박 운용 회사 설립(한국선박운용(주), 캠프선박운용(주))
- . 선물회사 및 백업센터 유치
- . 해외 선박금융기관 해외 IR 추진

- 파생금융 기반 조성

- . 파생상품 R&D센터 설립(1실 3팀, 총 20명, 한국거래소 내)
- . 탄소배출권 거래소 부산 유치(한국거래소)
- . 파생상품 접속장비(라우터) 부산 설치
- . 상품거래소 및 CCP 설립(한국거래소)

(라) 금융중심지 평판 확립을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 강화

- 금융중심지 해외 IR 활동 전개: 매년 상·하반기 개최
- 부산국제금융포럼, 한국선박금융포럼, 부산국제금융박람회, 부산 국제탄소 금융포럼, FATA/APG 자금세탁방지 국제회의 개최

▶ 2단계 특화금융 및 국제금융 인프라 구축(2013년 ~ 2016년)

1. 추진방향

- 1단계 사업 중 미완료 사업 지속 추진
- BIFC 조성 완료 및 금융기관 집적화 추진
- 금융중심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외국금융기관 및 특화(선박 및 파생) 금융기관 유치
- 이전 금융공공기관과 연계된 금융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 국제금융 인프라 구축

2. 주요사업

(가) 1단계 사업 중 미완료 사업 지속 추진

-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관련 법률 제·개정)
- . 조세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한국선박금융공사법 신설 등

- 파생금융 기반 조성 사업 추진
 - 탄소배출권 거래소, 상품거래소, 중앙청산소 유치 또는 설립, 선박금융전문 대학원 설립 등
- (나) BIFC 조성 완료 및 금융기관 집적화 추진
 - BIFC 조성 완료: 1단계(2014. 06), 2·3단계(2015. 12), 개별사업(2014. 12)
 - 금융기관 집적화 추진
 - 1단계 사업: 8개 기관 입주(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남부발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거래소, 농협은행 부산본부)
 - 2·3단계: 금융관련 백오피스, 백업센터 입주
 - 개별 사업: 3개 금융기관 입주(한국은행, 부산은행, 기술보증)
- (다) 금융중심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특화 금융기관 유치
 - 선박금융 기관 유치: 선박금융 부서이전, 선박금융전문기관, 선박운용회사
 - 선물회사 유치: 서울지역 61개사 중 36개 본·지점 유치
- (라) 이전 금융공공기관과 연계된 금융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 이전 공공기관들의 백오피스 및 백업센터 유치
 - 중·소형 금융기관 공동백업센터 설립 방안 추진
 - 상품거래소 본격 운영에 따른 현물거래소 집적화 추진
 - 탄소배출권 거래소 운영에 따른 환경전문 컨설팅 업체 유치
- (마) 국제금융인프라 구축
 - 해외 금융기관 대상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
 -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영업 및 진입관련 인허가 및 애로 건의 사항 처리
 - 외국인의 업무·생활환경 관련 정보 제공: 행정사무의 외국어 서비스 등
 - 파생상품 R&D센터 활용하여 글로벌 파생금융 네트워크 구축
 - 해외 거래소(시카고 거래소 등)와 파생상품 개발 공동연구활동 추진
 - 세계거래소 연맹 국제회의 유치 등 네트워크 구축
 - CCP 설립을 통한 동북아지역 중앙청산소로 업무영역 확대
 -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설립 추진
 - 부산지역을 동북아의 캡티브 보험사의 주요 소재지 거점으로 육성

▶ 3단계 국제적인 선박 파생금융 특화 클러스터 형성(2017년~2020년)

1. 추진방향

- 금융중심지 인프라를 활용 외국 금융기관 유치 활성화
- 해양(수산·선박), 파생금융 특화 클러스터 형성
- 부산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

2. 주요사업

(가) 금융중심지 인프라를 활용 외국 금융기관 유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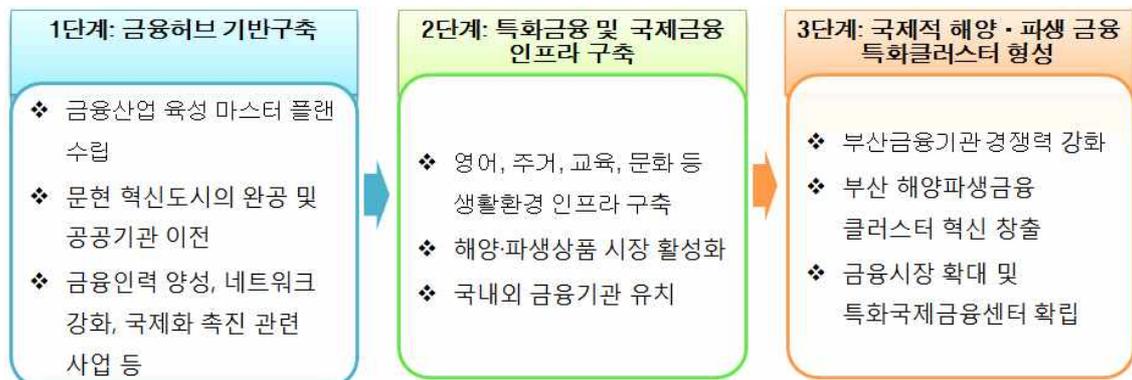
- 이슬람 금융을 활용한 외화자금 조달
- 동북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유치

(나) 해양(수산·선박) 파생금융 특화 클러스터 형성

- 해외 선박금융기관의 유치
- 해운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 및 해운기업의 설립
- 수협은행 본사 유치를 통한 수산금융산업 활성화
- 해상보험 상호회사 설립지원
- 기보의 녹색금융 활성화사업 지원

(다) 부산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 부산소재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기능 제고
- 부산국제금융연수원 설립
- 연계형 금융자유지대 구축



자료: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그림 III-6> 부산금융중심지 로드맵 요약

4.2. 로드맵 수정의 필요성과 강조되어야 할 부분

□ 기존 로드맵의 수정, 보완 필요성

-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로드맵의 기본육성계획, 세부추진방향, 단계별실행계획을 새롭게 수정, 보완할 필요 있음
 - 기존의 로드맵은 2010년도 작성된 것이어서 지난 3년간의 추진과정과 실적을 점검하여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존의 금융국제화 및 금융중심지의 정책 방향을 포기하거나 급격하게 재조정할 필요는 없으며, 부산금융중심지 정책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세부추진과제 중심의 수정이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금융시장통합법 시행 등 최근 금융관련 주요 변화들이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기존 로드맵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로드맵의 수정·보완시 고려할 부분

- 새로운 로드맵 작성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기존 로드맵의 단계별 기간 연장 필요
 -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금융기관 유치,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제는 단기간으로 성과를 이루기 어려운 사업이므로, 기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보다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 필요
 - 2020년까지 단계별 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은 해당 기간 내에 그것을 완성한다는 관점보다는 기반조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계별 추진보다는 동시적 추진이 바람직
 - 단계별 세부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되, 동시에 법·제도 정비, 금융중심지 홍보, 인프라 구축 등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큰 방향 제시와 함께 실천 가능한 세부방안 제시가 바람직
 - 부산시 등 추진주체가 실천 가능한 세부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4.3. 새로운 로드맵의 방향과 주요 내용

- 새로운 로드맵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새로운 로드맵이 기존 로드맵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므로 대부분 내용은 기존 로드맵과 유사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사항이 포함되고 강조되어야 할 것임

□ 새로운 로드맵의 기본 방향

- 제도적인 측면
 - ▶ 인센티브 강화
 - 조세 측면의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외국 금융기관 유인책 확대
 - ▶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금융특구 지정으로 차별화된 규제 적용 추진
 - 한국은 글로벌 금융중심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산업의 규제가 강하므로 규제 완화를 통한 환경 조성 필요
- 인프라 측면
 - ▶ 외국인 금융전문가를 위한 생활여건 개선
 - 주거, 교육, 의료, 법률, 교통, 문화, 여가 부분 등의 유기적 협력 및 개발
-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 ▶ 금융비즈니스 클러스터 형성
 - 백오피스 기능 중심의 금융기관 및 금융기능 집적

□ 새로운 로드맵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육성 추진
 - 외국 금융중심지 발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진 금융중심지들은 최소 수십 년에서 최대 수백 년에 걸쳐 조성되었음
 - 국제금융중심지는 중심기관, 제도, 전문인력, IT망, 공항(과거 항만) 등의 조건이 조화를 이루며 준비되어 있어야 형성, 발전할 수 있음
 - 다양한 소프트 및 하드 인프라가 자연스럽게 집적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부산 금융중심지 정책은 공공금융기관 이전에만 초점을 맞춘 듯함

- 부산금융중심지는 이전 공공금융기관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금융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함
 - ▶ 1단계(금융중심지 착근)
 - 2014년까지 공공기관 이전 완료, 해양선박금융·파생상품 특화 기반 조성, 법제도 정비, 금융전문인력 양성, 지속적 홍보 활동
 - ▶ 2단계(금융중심지 성숙)
 - 2020년까지 공공금융기관 산하기관 유치 및 연계산업 육성, 백오피스 기능 유치, 금융시장 확대, 국내 금융기관 집적화, 역외금융중심지 형성을 위한 기반 마련, 금융전문인력 양성 강화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
 - ▶ 3단계(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
 - 글로벌 금융기관 유치, 금융업무 포트폴리오의 확대, 금융중심지 인프라의 글로벌 수준 도달

4.4. 새로운 로드맵의 내용 검토

- 새로운 로드맵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함
- 조세 혜택 등 인센티브제도 강화
 - ‘부산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 외국 글로벌 금융중심지 수준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
 - 법인세, 취득세 등 세금 감면 범위와 혜택의 정도를 확대하고 기간을 충분히 연장하는 것이 필요함
 - 주요 글로벌 금융중심지가 역외금융중심지이기도 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역외금융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도 및 최근 출범한 상하이FTZ에서 시행되는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부산금융중심지의 위상 제고
 - 정부는 2009년 1월 서울과 더불어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선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제2의 국제적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음

- 부산시는 한국거래소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본사, 이전 예정 금융공기업(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주택금융공사) 등을 문헌금융단지에 입지시켜 선박금융 및 파생상품에 특화된 금융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을 수립함
- 하지만 부산이 국제 금융중심지로의 발돋움하기 위한 현행 제반 여건을 분석하면, 경쟁상대인 아시아 금융중심지(싱가포르, 홍콩 등)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임(<표Ⅲ-8> 참조)

<표Ⅲ-8> 금융중심지 평가항목 비교

항목	동경	홍콩	싱가포르	뉴욕	런던	서울	부산
금융시장의 다양성 및 크기	○	○	○	◎	◎	△	×
금융전문인력	△	○	○	◎	◎	○	×
국제적 은행의 존재	△	◎	○	◎	◎	△	×
금융상품의 다양성	○	○	○	◎	○	×	×
금융시장규제	△	◎	◎	○	○	△	△
금융상품거래량	○	○	○	◎	◎	○	×
금융기관 운영비용	△	◎	◎	-	-	△	△
거래결제제도	△	○	○	○	○	△	△
하부구조 여건	×	○	○	○	○	△	△
특화분야 육성	△	△	◎	△	◎	○	○
영어 구사능력	×	○	○	◎	◎	×	×
정보교류	○	○	○	○	○	△	×

주 : ◎ 강한 경쟁력 보유, ○ 경쟁력 보유, △ 경쟁력 보통, × 경쟁력 부족

자료: 이종필(2011).

- 부산이 불리한 여건과 위상을 극복하고 동북아시아의 여러 금융중심지와 경쟁할 수 있는 선박금융 및 파생상품 특화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지리적 강점을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조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해양선박금융·파생상품에 특화 전략

- 부산금융중심지는 도시의 지리적 특성상 해양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선박금융산업을 특화시켜야 국제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음
 - 세계 유수의 조선소와 연계한 선박·조선·해운금융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일차적으로 동남권에 위치한 세계적 조선소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해상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사 본사 유치, LME 창고증권에 대한 펀드 조성 및 파생상품 개발, 글로벌 항만개발 및 유지를 위한 다양한 금융기법 및 상품 개발이 요구됨

- 국제해운거래소를 유치하여 선박거래뿐만 아니라 ‘물류+자본’, ‘선박건조+자본’, ‘관광+선박+자본’, ‘부동산+물류+자본’ 등과 같은 확장형 펀드상품 개발을 통한 대형자본 및 국제자본의 유입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 있음
- 부산금융중심지의 성공적 육성을 위해 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협력업체 등이 상호 네트워킹하며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향후 문현금융단지를 중심으로 북항 재개발지구로 금융중심지를 확대하여 해양금융 클러스터의 기반 조성 및 해양 금융인력의 육성 및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선박금융회사가 한국거래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선박·물류 펀드 관련 파생상품을 개발하고, 해운 및 조선 산업이 경기순환적인 산업인 점을 고려하여 리스크 헤지형 파생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선박금융의 발전을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우선, 선박금융전문기관의 설립, 해외 선박금융기관의 지점 유치, 국내 금융권의 선박금융기능 유치, 부산소재 금융권의 선박금융기능 제고, 선박투자회사의 유치 및 설립, 해운거래소의 설립과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자료: 이기환 외(2012)

<그림 III-7> 부산의 선박금융 발전 방안

○ 탄소배출권거래소와 관련기관 유치

- 세계 탄소시장 규모의 급성장으로 탄소거래의 활성화가 예상되며, 정부는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의 본격 시행을 추진하고 있음
- 부·울·경 지역은 탄소거래의 수요·공급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동남경제권의 탄소배출량은 전국의 25%)이며, 부산금융중심지 지정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어 있음
- 파생상품 금융인프라 구축 및 특화금융중심지 기반 마련을 위해 KRX의 거래시스템 노하우를 활용하여, 저비용·고효율의 장점을 발전시켜 동북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음
- 탄소배출권거래와 관련된 인증 및 검증 기관의 유치를 통해서 정보통신을 융합한 녹색물류 및 관광분야 개발 기회를 포착하고, 동남경제권의 녹색성장 전략으로 대규모 자본투자 기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부산금융중심지의 특성에 맞는 금융업무 포트폴리오 구성

-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및 설립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클러스터의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일도 필요함
- 부산금융중심지는 해양금융, 파생금융, 신성장 녹색금융, 특화보험, 신기술금융 등 다양한 금융업무 포트폴리오를 추진하여 금융업무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해양금융은 선박금융, 수산금융, 항만설비금융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부산 인근지역의 조선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동시에 동북아 물류중심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금융업무인 것으로 판단됨
 - 부산에 위치한 한국거래소를 통한 파생상품, 향후 급격한 시장성장이 예상되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포함한 신성장 녹색금융,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신기술금융 등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부산금융중심지에 금융·보험·연금업과 연관기업의 설립을 유도할 필요 있음
- 부산은 서울의 금융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두 지역의 보완·경쟁 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이 필요함

- 서울이 프론트오피스 기능 중심의 종합금융중심지로 성장하고 부산은 백오피스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두 지역 간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 부산은 이전 예정인 백오피스 금융공기업(한국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백오피스의 기능을 수행하면 서울과의 비교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금융중심지와 경쟁에서 서울과 함께 상호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

- 부산금융중심지의 선박금융·파생상품 특화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실무형 융합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함
 - 해양·파생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예, BUSAN NURI)을 추진할 필요 있음
 - 금융선물 인력양성의 노하우와 장비를 큰 추가비용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 있음
 - 학부·대학원 과정과 연계하는 금융교육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있음
 - 국내·외 우수 금융전문대학원을 유치하거나 설립하여 금융전문인력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 있음
 - 정부, 지자체, 금융업계 및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산국제금융연수원 설립을 추진할 필요 있음

□ 추진체계의 조직과 기능 확대

- 금융중심지지원센터와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가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체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금융감독원 소속으로 서울과 부산 금융중심지 추진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음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는 4명의 조직으로 인원이 너무 부족하고, 부산시청 금융산업과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어 권한과 독립성이 약하며, 창의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이 결여되어 있음
-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에 특화된 조직이 필요함
 - 특화금융중심지에 적합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기능
- 외국인의 부산 진입에 대한 법·제도적 서비스,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즉각적인 피드백 시스템 구축
- 투자유치, 산업정책, 문화·관광, 의료, 교육 등 기능 조직들 사이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끌어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
-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체계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체계를 행정조직에서 민간조직으로 단계적으로 이관할 필요 있음
 - 부산경제진흥원 산하 부산금융도시추진센터의 별도 법인화를 추진하는 방안, 또는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여 전문적 조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있음
 - 부산금융중심지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지원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4.5. 새롭게 보완된 로드맵 제안

□ STAGE 1: 금융중심지 착근

- 금융중심지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사업
 - 부산국제금융센터 준공 및 공공 금융기관 입주: 복합개발사업과 개별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계획에 차질 없이 입주를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계속 진행
 - 금융전문인력 양성: 기존 운용되고 있는 금융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산학연계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지속 추진
-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및 보완
 - 기존의 금융중심지 관련 법률 및 조례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정 노력: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금 감면의 범위와 기간, 혜택 정도를 글로벌 금융중심지 수준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

- 해양선박금융·파생상품 특화 기반 조성
 - CCP 설립,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 등 기존 로드맵과 유사하게 특화 기반 조성사업을 지속하되, 해양선박금융의 범위를 좁게 보지 않고 넓은 의미에서의 해양선박금융에 초점을 맞추도록 함
 - KRX 파생상품 시세정보분배 시스템의 부산 설치(조성렬, 2013)
 - 조선소, 해양플랜트 기업 등과 연계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해운거래소를 유치하여 확장형 펀드상품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금융중심지 평판 확립을 위한 국내·외 홍보활동 계속 및 금융교육, 금융중심지 홍보 프로그램 대상 확대: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금융중심지 해외 IR 활동, 각종 포럼 외에도, 부산지역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금융교육, 금융중심지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 전체의 금융교육 및 금융중심지에 대한 인식 수준 제고

□ STAGE 2: 금융중심지 성숙

- 이전 단계 사업 중 미완료 사업 지속추진 및 강화
 - 금융전문인력 교육 강화: 부산금융중심지에 입주한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존 금융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강화 및 외국 대학교 캠퍼스 유치, 국내·외 대학 간 금융전공 연계한 학점인정제 등 교육프로그램 추진
 - 그 외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 및 금융중심지 홍보활동 계속 진행
- 부산금융중심지를 금융특구로 지정 추진: 기존의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등과 같이 기능이 통합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가능할 수 있는 특별지역으로 육성 추진 및 관련법 검토
-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체계를 일원화 할 수 있는 조직 구성 추진: 현재는 부산금융중심지 담당하는 조직이 금융중심지지원센터와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앞으로 부산금융중심지 내 입주기관에게 일원화된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강화된 조직 구성 추진

- BIFC로 이전한 금융기관과 연계된 백업기능 기관 및 탄소배출권 거래소 운영에 따른 환경관련 컨설팅 업체 유치, 국내 금융기관 집적화
 - 기존 로드맵과 유사하게, 이전 기관들의 백업기능을 담당하는 법률자문회사, IT 기업 등을 유치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소 운영에 따른 환경부문 전문 컨설팅 업체를 유치
 - 국내 중소규모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금융기관의 PB 부분 등 국내 금융기관 집적화를 통한 클러스터 형성
- 글로벌 금융 및 특화금융 인프라 구축: 파생상품 R&D 센터를 활용한 글로벌 파생금융 네트워크 구축, CCP의 업무영역을 동북아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 역외금융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부산금융중심지의 역외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해외 주요 역외금융중심지의 제도개선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 마련

□ STAGE 3: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

- 금융중심지 인프라를 활용한 외국 금융기관 유치 활성화: 외국 금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를 유치하여 글로벌 금융클러스터를 형성
- 금융업무 포트폴리오의 확대: 해양선박금융과 파생금융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되, 신성장 녹색금융, 특화보험, 신기술금융 등 다양한 금융업무 포트폴리오를 추진하여 새로운 금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부산금융중심지 관리체계를 행정조직에서 민간조직으로 이관 추진: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독립된 법인 형태의 민간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부산금융중심지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지원에 활용
- 글로벌 금융중심지 위상에 걸맞은 도시 재창조 진행: 국내·외 금융기관 소속 기관 직원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도시계획 및 환경개선 사업 등 진행

IV. 맺음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및 추진에 대한 계획을 재조명하고 수정할 필요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선박금융이 위축되는 등 부산금융중심지의 파생·선박금융 특화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기존의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마스트플랜을 작성할 시점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고려하기 어려웠고 또 그 마스트플랜이 작성된 지도 3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평가하고 국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마스트플랜을 부분적으로 수정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는 부산금융중심지의 파생금융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글로벌 금융기관의 영업전략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음
 - 바젤Ⅲ와 G-SIFI에 대한 규제 등 글로벌 시스템 리스크 막기 위한 각종 정책이 마련되고 있어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은 높아지겠지만 수익성 악화가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영업전략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있고 관련 업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부산금융중심지의 파생금융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파생상품부문 수익 감소에 대응하여 수익구조 다각화를 위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자산운용업, PB 사업 부문을 강화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흥국시장 진출을 추진하기도 함
 - 부산금융중심지는 파생금융 규제에 대비하고 IB, PB 업무의 백오피스/백업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는 부산금융중심지의 주된 비전의 하나인 선박금융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글로벌 선박금융의 거래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여 부산금융중심지의 선박금융 육성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한 교역 감소, BRICs 국가의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인하여 해상물동량의 감소, 해상운임의 하락 등 때문에 해운선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음. 이에 따른 조선업 침체, 선박금융 동반 침체 이어짐
- 2011년부터 유럽계 은행들의 비중이 감소하고, 아시아권의 은행들의 선박금융 비중이 증가함. 선박금융전문기관 설립, 국제해운거래소 유치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선박금융 특화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야 함
-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P-CBO 제도 등 회사채시장을 통한 선박금융 자금조달, 신디케이트론의 유동화 등 장기채권시장을 통한 선박금융시장 확대 방안을 연구할 필요 있음. 선박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선박펀드, 유가증권 펀드, 부동산 펀드 등)을 묶은 합성펀드의 개발, 자산운용사의 선박펀드 진출 확대 등을 통한 선박금융 활성화 방안도 연구할 필요 있음

○ 글로벌 금융중심지들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전통적인 금융중심지인 유럽지역은 위축되고 아시아/태평양, 아메리카 지역의 신흥 금융중심지 순위가 상승하고 있음. 2013년도 평가에서 뉴욕, 런던, 홍콩, 싱가포르 등은 국제금융센터의 리더로, 그리고 더블린, 서울 등은 비교적 광범위한 국제금융센터로 평가 받음
- 앞으로 중요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중심지는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싱가포르, 상하이, 홍콩, 서울 등). 최근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므로, 이것이 외국금융기관을 유치하는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아시아지역 선발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도쿄, 홍콩, 싱가포르 등과 협력을 통하여 부산금융중심지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프론트오피스와 백오피스 업무의 협력, 선박금융 신디케이트론에의 참여를 위한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아시아지역 금융중심지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국내 대형 투자은행(IB)의 출현이 기대되었지만, 금융위기 이후 리만 브라더스 등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들의 도산이 이어져 당분간 국내에서 대형 투자은행의 출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임
 - 하지만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부산에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가 설치될 예정이어서,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가 확대되어 부산금융중심지가 파생상품특화 금융중심지로 자리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른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복수의 거래소등장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KRX의 독점적 지위가 상실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부산금융중심지 입장에서 불리한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부산금융중심지가 파생상품, 선박금융 특화중심지로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역외금융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준비도 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부산금융중심지가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역외금융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요구됨
 - 런던, 뉴욕, 홍콩, 싱가포르 등은 글로벌 금융중심지이자 글로벌 역외금융중심지이기도 함
 - 특히 싱가포르는 역외금융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차별적 규제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하여 외국 금융기관 유치에 성공하였고,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성장하였음
 - 한편 최근 상하이FTZ의 출범으로, 향후 상하이 지역이 역외금융중심지로서 성장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부산금융중심지 발전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음
 -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글로벌 역외금융중심지에서 시행되었던 각종 정책과 현재 상하이FTZ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센티브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불경기와 사회복지비 예산 증가로 인해 최근 정부는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부산금융중심지의 조세감면 혜택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논리를 개발하여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함

- 부산금융중심지가 금융특구 및 역외금융 육성을 발전방안의 주요 부분으로 설정하고 추진하려면 무엇보다도 글로벌 금융중심지 수준의 차별적인 조세혜택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합리적인 논리 개발이 필요함
-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로드맵이 연구될 필요가 있음. 새로운 로드맵은 다음과 같은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보다 장기적인 관점과 시야에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로드맵을 준비할 필요 있음
 - 구체적인 기간별 로드맵보다는 당장 추진해야 할 단기과제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할 장기과제로만 구분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단기과제와 장기과제는 필요한 시점마다 재검토하여 수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부산금융중심지 육성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금융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부산금융중심지 육성계획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금융중심지 육성에는 수십 년의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해가는 노력이 필요함

참고문헌

- 금융위원회, 2007, “뉴욕, 런던시 등의 금융클러스터 조성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연구”, 동향/연구보고서.
- 금융위원회, 2012,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 2012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 금융투자협회, 2013, 『2012 장외파생상품 시장동향 Report』.
- 김병덕, 2009, “위기 이후 금융국제화 및 금융중심지 정책”, 『주간 금융 브리프』, 18(40), 3-7
- 김병덕, 2009, “부산의 국제금융중심지 발전 전략”, 『주간 금융 브리프』, 18(45), 한국금융연구원, 14-15.
- 김영재 · 박수남 · 김진건, 2010, “국제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발전전략”, 『지역사회연구』, 18(3), 105-130.
- 김윤일, 2009, “금융중심지 지정에 따른 부산의 향후 추진 방안”, 『부산발전포럼』, 116, 29-33.
- 김정수, 2011, “부산지역 국제 금융중심지 육성의 차별화 전략”, 『청춘논총』, 12, 193-221.
- 김태혁, 2009, “금융중심지 지정에 따른 금융인력양성 방안”, 『부산발전포럼』, 116, 25-28.
- 김자봉, 2007, “영국 금융빅뱅사례와 국내 자본시장빅뱅의 조건”, 『주간 금융브리프』, 16(47), 한국금융연구원, 12-13.
- 김태혁, 2009, 『금융중심지 지정에 따른 금융인력양성방안』, 부산발전연구원.
- 김한수, 2009, “국제금융중심지로서 상해의 위상 및 향후 과제”,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09년 10월, 한국자본시장연구원, 1-4.
- 김한수 · 김보영 · 정은경, 2011, 『금융위기 이후 주요도시의 국제금융중심지 전략 변화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 남주하, 2013, “정책금융체계 개편방향”, 정책금융포럼 발표자료집.
- 부산광역시, 2010,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미스터플랜』.
- 부산국제금융센터, 2012~2013, 『Inside 부산금융』, 1~6호.
- 송두한 · 최성중, 2011, “국내외 주요 금융제도 및 규제 변화”, 『CEO Focus』, 281, 농협경제연구소.

- 송종준, 2013,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의 의미와 과제”, 금융투자협회.
- 여지나, 2007,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홍콩의 현황과 시사점”, 『지역경제포커스』, 7(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양오석·민상기, 2009, “국제 금융 중심지의 입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분석 : 경쟁우위 요소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5(3), 77-113.
- 여대웅, 2013, “국내 선박금융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파생상품 Summary Report, 13-9, 한국거래소.
- 이연정·이민환·윤성민, 2010, “부산 월격지 금융백업센터 구축 타당성 연구”, 『산업혁신연구』, 26(2), 123-151.
- 윤형호, 2009, “여의도 금융중심지 정주환경 개선방안”, 『서울경제』, 54,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5-27.
- 이기환, 2008, 『선박 및 항만금융의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산업의 국제화: 부산의 특화금융허브 발전방향』, 부산발전연구원.
- 이기환, 2010, “선박금융강화방안”, 해운위기와 선박금융 강화방안 세미나 발표자료,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기환·유일선·김현석·김강혁·박선나, 2012, 『선박금융기관의 부산유치를 위한 정책방안 구축』.
- 이동훈, 2012, “금융중심지 지정해 놓고 여의도 떠나는 금융위원회 금융기관들도 탈출 행렬”, 『주간조선』, 2209, 64-65.
- 이순호, 2010, “서울과 부산 금융중심지 보완발전 전략”, 『주간 금융 브리프』, 19(4), 12-13.
- 이영준·윤성민·이대식·이민환, 2013,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금융 백오피스 업무의 사업화 방안”, 『경제연구』, 31(2), 225-251.
- 이원일, 2009, “장외파생상품 CCP서비스 도입 방향”, KRX Market, 한국거래소.
- 이인애, 2011, “부산시의 ‘야심’ 선박·파생금융중심지 전략”, 『해양한국』, 2011년 3월호, 28-33.
- 이정환, 2009,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에 따른 정책과제”, 『부산발전포럼』, 116, 4-5.
- 이종필, 2011, “부산 금융중심지의 성공조건”, 『BDI 포커스』, 99, 1-12.
- 이지연, 2011, “한국의 금융중심지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자본시장연구원, 2010,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투자은행들의 FICC 영업 위축”, 자본시장 Weekly, 2010-27호.
- 장경석, 2013, “선박금융의 새로운 트렌드 발현과 시사점”, 하나 산업정보, 제18호(2013. 5. 6),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조성렬, 2009, “과생 금융중심지 과제와 전략추진 방향”, 『부산발전포럼』, 116, 20-24.
- 조성렬, 2013, “KRX 공공기관 해제의 선행조건”, 국제신문(2013.12.15.).
- 조용범·성유림, 2013, “해외 사례로 본 부산 금융중심지 추진의 미비점 및 향후 과제”, 지역경제 조사연구자료, 한국은행 부산본부.
- 전희정, 2013,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설립 추진경과 및 과제”, 월간신한리뷰.
- 조성제, 2013, “동아시아지역 선박금융의 경쟁과 협력”, 부산대학교 경제통상연구원, 초광역라운드테이블 발표자료.
- 조재호, 2011, “부산 금융중심지의 해양특성화 개발계획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광해 외, 2010, 『외국인 투자자가 본 국제금융중심지 홍콩의 일곱 가지 매직』, 한국금융연구원.
- 최생립, 2009, “국제 금융중심지 서울: 여건과 과제”, 『서울경제』, 54, 서울시정개발연구원, 3-10.
- 최승필, 2008, “동북아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금융규제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1(1), 233-258.
- 최진배·윤창준, 2011, “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한 부산지역 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부산본부.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2, “해외 글로벌 중견 IB, 시장환경 악화로 사업 축소 추세”, 금융경영브리프.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2, “골드만삭스, PB사업 확대 발표”, 금융경영브리프.
- 하태경, 2013, “변화된 금융환경과 은행의 신용등급”, KIS Credit Monitor (2013.1.14.), 한국신용평가.
- 한국수출입은행, 2012, “중국, 상하이 국제금융 중심지로 육성”, 상해사무소.
- 한국자본시장연구원, 2012, “투자은행 활성화 및 ATS·CCP 도입”, 자본시장법개정안 국회 정책토론회.
- 홍성인, 2012, “세계 선박금융시장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2012. 8), 36-46.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2, KB 금융지식비타민: 규제환경변화.

KDB산업은행, 2013, “해외 주요 IB의 최근 영업동향 및 시사점”, 글로벌 경제이슈.

Elliot, D. J., 2011, “Building a Global Financial Center in Shanghai: Observations from Other Centers,” John L. Thornton China Center at Brookings.

Eoyang, C., J. Lui and S. Koul, 2010, “Shanghai in 2020: Asia’s Financial Centre,” Goldman Sachs Global Economics Paper No. 198.

Leung, C. and O. Unteroberdoerster, 2008, “Hong Kong SAR as a Financial Center for Asia: Trends and Implications,” IMF Working Paper No. 08/57.

Mainelli, M., 2006, “Global Financial Centers: One, Two, Three . . . Infinity?” Journal of Risk Finance, 7(2), March.

Foroohar, R., 2009, “갈림길에 선 홍콩 : 상하이가 중국의 금융중심지로 부각되면서 새로운 역할 모색 나서”, 『뉴스위크韓國版』, 855, 19(4).

Shirai, S., 2007, “Promoting Tokyo as 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Sciences Po Working Paper.

Wehrfritz, G. and S. Kolesnikov-Jessop, 2007, “성공의 값비싼 대가 : 홍콩과 싱가포르,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 자리 잡으면서 구인난과 부동산 가격 폭등에 시달려”, 『뉴스위크韓國版』, 794, 17(34).

Z/Yen, 2007~2013, The Global Financial Centers Index 1~13, Long Finance, City of London.